

전쟁과 물자 : 군수와 물품으로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 일시: 2022년 12월 23일(금) 13:30~17:20
- 장소: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1호관(301동) 124호 다목적홀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쟁과 물자 : 군수와 물품으로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 일시: 2022년 12월 23일(금) 13:30~17:20
- 장소: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1호관(301동) 124호 다목적홀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학술대회 일정 2022년 12월 23일(금)

전쟁과 물자 : 군수와 물품으로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1부 발표

사회 | 권기석(동국대)

13:30~14:00

【제1발표】

임진전쟁 군수연구의 몇 가지 문제들

발표 | 김경태(전남대)

14:00~14:30

【제2발표】

『吏文騰錄』 중에 보이는 朝·明 군수관계문서

발표 | 스즈키 카이(메이지대)

14:30~15:00

【제3발표】

임진전쟁기 明軍의 군수체계와 중국산 면포

발표 | 임경준(동국대)

15:00~15:10

휴식

2부 발표

사회 | 이승민(동국대)

15:10~15:40

【제4발표】

임진전쟁기 중국 선박의 조선 파견

발표 | 남민구(동국대)

15:40~16:10

【제5발표】

宗義智 수신 德川家康 서장을 통해 본 조일 국교회복
: 朝鮮 물품의 獻上에 주목하여

발표 | 이해진(동국대)

16:10~16:20

휴식

종합토론

좌장 | 허남린(UBC)

16:20~17:20

【종합토론】

발표자·방청객

목 차

【제1발표】 김경태(전남대) 임진전쟁 군수연구의 몇 가지 문제들	11
【제2발표】 스즈키 카이(메이지대) 『吏文臚錄』 중에 보이는 朝·明 군수관계문서	23
【제3발표】 임경준(동국대) 임진전쟁기 明軍의 군수체계와 중국산 면포	39
【제4발표】 남민구(동국대) 임진전쟁기 중국 선박의 조선 파견	61
【제5발표】 이해진(동국대) 宗義智 수신 德川家康 서장을 통해 본 조일 국교회복 : 朝鮮 물품의 獻上에 주목하여	77

【제1발표】

임진전쟁 군수연구의 몇 가지 문제들

김경태(전남대)

임진전쟁 군수연구의 몇 가지 문제들

김경태(전남대학교)

서론 : 문제제기

- 전쟁에서 보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
- 임진전쟁 시기 보급에 관한 사료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세 나라의 사료가 함께 존재. 명이 군량을 마련하고 조선이 운송. 일본은 조선에서 군량을 구하려 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
- 흩어진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한 연구가 필요 = 물자가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졌으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풀어야 함.
- 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해야만 함.
- 보급에 관한 세 나라의 주요 사료를 소개하고, 임진전쟁의 보급 연구를 위해 이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어떤 연구 방법론이 가능할 지에 대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명군 : 명군의 병력

- 1592년 12월. 40,000~50,000의 병력이 동원.

→ 동원 예정 병력과 실제 병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동하는 병력도 있었다.

→ 새로 파병되는 명군, 철수하는 명군. 조선 내에서 이동하는 명군.

(어떤 시점에,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가)

→ 대략적인 수는 추정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를 도출하기 어려움. 병종도 고려해야 함.

명군 : 1일 지급액

- 1592년 12월 3일 지급 기준

: 일반병사의 경우 쌀 1승 5홉(合) / 소금 및 채소 값으로 은 3푼 / 절색(折色 : 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총 5푼
(『經略復國要編』 권4-3)

- 1593년 8월 10일

: 일반병사의 월량(月糧) = 은 1냥 5전 / 행량(行糧), 소금과 채소(鹽菜) 값 = 은 1냥 5전 / 옷·신발 = 은 3전 / 호상(稿賞) = 은 3전 / 도합 3냥 6전 (1일 1전 2푼)

(『선조실록』)

→ 사료에 따라 지급량에 차이가 있음.

→ 조선과 명의 도량형 차이, 군량과 은의 환산비율,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야만 함.

→ 물가 - 특정 시점과 장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예 : 절은 6전 5푼이 미 1석 (『명사』 식화지) / 중국 은 1냥으로 쌀이나 콩 2곡 구입가능 (권협, 『연행록』 1597년 5월 13일)

* 부피단위 : 홉(合) → 되(升) → 말(斗) → 석(石) (10홉=1되, 10되=1말)

** 화폐단위 : 푼(分) → 전(錢) → 냥(兩) → 관(貫) (10푼=1전, 10전=1냥)



211. 중국 명나라의 말(과)

'成化兵子' 銘 銅斗로 높이 18.6cm, 윗면 길이 28.4cm, 용적 9.6l이다. 앞뒤로 '成化兵子', '福, 壽, 康, 寧'의 명문이 있는데, 成化는 명나라 현종의 연호(1466~1487)이다.

명군 : 휴대용 군량 및 식단

- 1592년 12월 조선에 진입한 명군. 의주에서부터 3일 치의 군량을 준비. 조선은 매일 숙소에서 하루치 군량을 지급하면 전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 명군은 조선에 진입한 이후 군량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건량(乾糧)을 준비.

→ 3일 치 휴대군량은 건량인가? 군사의 이동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문제가 발생.

- 명군의 식단

: 장교 (고기 한 접시, 두부·소채·절인 생선 각 한 접시, 밥 한 주발, 술 세 잔)

→ 명군은 반찬도 중요했음. 명에서는 이를 실물로 지급하지 않고 구매비용을 은으로 지급. 조선에서 이를 구하기는 어려웠음. 명군은 이에 불만을 가짐.

명군 : 말과 말의 먹이

- 말은 콩과 풀을 함께 먹어야 했다.

: 콩 7승 (『선조실록』)

: 콩 3승, 풀 1속(束) (『經略復國要編』 권4-3)

: 요(料) 1소두(小斗), 풀 1속(束). 점심(中火) 때 말먹이로는 삶은 요(料) 4소승(小升)만 지급
(『선조실록』)

: 먹이 공급이 되지 않자 죽는 말이 급증 = 명군 기병의 전투력과 직결

: 설득이 가능한 인간과 설득이 불가능한 말

명군 : 변화

- 1596년 4월, 군사 1인당 쌀 3승, 말 1필당 콩 5승 기준. “가장 간략하게 한 수량” (조선의 단위?)

- 명의 지급 기준 남병과 북병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급량, 지급방식, 징수할 장소 등은 변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 도량형

- 조선의 단위

: 홑(合)-되(升)-말(斗)-석(石:곡斛)

: 15말=1석(平石:곡식), 20말=1석(全石:장류)

(『경국대전』) * 당시 1홑 = 약 60ml / 1승 = 약 0.6l

- 조선과 명 단위 환산

“본국과 중국의 되·말·석(石)은 크고 작은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0승을 1두(斗)로 치고 10두를 1석으로 치지만 본국에서는 15두를 1석으로 칩니다. 중국의 쌀 1승 5홑은 본국의 2승 7홑에 준하고 콩 3승은 대략 5승 4홑에 준합니다” (중국 단위는 조선의 1.8배)

『경국대전』의 도량형 단위표

度量衡單位表					諸尺比				
度	量		衡		基準尺 比較尺	黃鍾尺	미터법(cm) 평균 수치		
	1/10分	1/10合	分	10釐					
釐	1/10分	1/10合	分	10釐	黃鍾尺	1.000	34		
分	10釐	10分	錢	10分	周尺	0.606	20		
寸	10分	10合	兩	10錢	營造尺	0.899	30		
尺	10寸	10升	斤	16兩	造禮器尺	0.823	28		
丈	10尺	小斛 平石	15斗	稱	小稱	3斤(1斤)	布帛尺	1.348	46
		大斛 全石	20斗		中稱	30斤(7斤)			
					大稱	100斤			

리터법과의 비교값

광무 6년		광무 9년		1964년			
勺	0.006 l	勺	0.018 l	勺	0.02 l	dl(先加增突)	5抄 5撮 4圭
合	0.06 l	合	0.18 l	合	0.2 l	dl(大始增突)	5勺 5抄 4撮 4圭
升	0.6 l	升	1.80 l	升	2 l	l(增突)	5合 5勺 4抄 3撮 5圭
斗	6.03 l	斗	18.03 l	斗	20 l	dal(大可增突)	5升 5合 4勺 3抄 5撮 2圭
石	90 l	石	180.39 l	石	200 l	hl(赫得增突)	5斗 5升 4合 3勺 5抄 2撮 4圭



122. 홑(一合)
가로 6.5cm, 세로 5.5cm, 높이 4cm
1902년(광무 6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23. 되(一升)
가로 12cm, 세로 12cm, 높이 6.8cm
1902년(광무 6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되의 단위 비교표 : 작(勺), 홑(合), 되(升), 말(斗), 석(石, 斛)

『經國大典』(1469)		光武 6年(1902)		光武 9年(1905)	
勺	1/10合	勺	1/10合	勺	1/10合
合	10勺	合	10勺	合	10勺
升	10合	升	10合	升	10合
斗	10升	斗	10升	斗	10升
斛	小斛平石	15斗	石	15斗	石
	大斛全石	20斗		10斗	



154. 되(麥斗)
가로 10.8cm, 세로 8.8cm, 높이 7.8cm
2005년(광무 29년) 소장
장방형의 되로, 무늬로 구획되어 있다. 각기 한편의 용량은 0.29l, 0.42l로, 전체 0.69l에 해당한다. 즉, 무늬를 합쳐야 한 되가 된다.



155. 되(麥石)
가로 27cm, 세로 10.5cm, 높이 9.5cm
2005년(광무 29년) 소장
장방형의 되로, 세로로 구획되어 있다. 한편이 한 되로, 각기 한편의 용량은 0.59l, 0.56l, 0.53l이다. 전체 합하면 1.69l, 즉 세 되 정도이다.

조선 : 조선의 병력

- 1593년 조선이 보고한 병력 수 : 총 172,400명 (선조실록)

→ 군역 장부상의 병력 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장부상의 기록인가

- 조선의 군병은 1만 명도 채 못 된다는 선조의 발언 (선조실록)

- 1595년 조선이 명군에 보고한 전선(戰線)의 병력 수 : 총 13,382명 (사대문궤)

조선 : 조선군의 군량

- 1593년 4월, 조선군의 군량 상황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단지 명군의 군량으로 좁쌀(田米) 또는 물에 젖어 썩은 쌀을, 날마다 1인 당 7홉(습)씩 줄 뿐이고, 말먹이는 전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군사는 받은 군량을 그들의 굶주린 처자식과 나눠 먹는 까닭으로 종일토록 겨우 쌀 반 되(半升)만을 먹는데, 이마저도 주지 못하므로 굶주려서 누르스름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기력이 전혀 없습니다”

- 조선군은 휴대용 군량이 없었는가?

조선 : 조선군의 군량

→ 군량문제에서 조선은 명군 군량 지원이 우선. 조선군은 보조적 위치. 주요 병력 외에 군역 자원, 의병은 군량 운송에 투여. 군량 지원에서도 후순위로 밀림.

→ 그러나 민간에서 마구잡이로 징발할 수도 없음.

→ 명군이 명군을 위해 군량을 지원. 의주에서 전선으로 수송이 어려웠음. 조선은 조선의 군량으로 지원한 후, 명군 군량으로 조선인을 먹이기로 함. 추후 명에서 문제제기.

→ 또 다른 문제 : 명군은 요동지역에서 공급된 좁쌀(소미小米)를 거부하고 조선의 대미(大米)를 원함.

일본 : 일본군의 병력

- 1592년 3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 9개의 부대, 총 158,700명 동원계획

→ 계획대로 동원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시마즈 요시히로의 예)

- 각 다이묘의 문서에는 병력의 구성이 자세히 기재된 사례가 있다 : 동원 체제의 특징 (명, 조선과의 차이)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토지 조사(생산량 조사)에 따른 군역부과, 각 다이묘들은 가신(家臣)들에게 다시 군역을 부과. 가신은 그들의 가신에게 부과. (다만 동원된 모두가 전투 병력은 아님) 동원 방식은 조선과 명과는 달랐음.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가짐. 대규모 병력을 단 시간에 바다를 건너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

+ 동원 및 보급에 대한 목록형 사료가 존재.

일본 : 군량 상황의 악화

- 일본군의 군량은 자급제

: 각 부대는 군량을 영지, 혹은 조선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함. 그러나 현지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군량조달 상황에 위기가 찾아옴.
1592년 8월부터 군량 문제가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12월, 이듬해 8월까지의 군량지원을 결정 (黒田家文書)

: 이 군량은 어디까지나 대여된 것. 또한 부산에서 내륙으로의 수송도 각 부대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야만 했음 (加藤清正家藏文書)

- 1593년 1월 23일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황 보고 (金井文書)

: 3월까지의 군량 밖에 존재하지 않음

: 충청도 전라도에 진격하지 않아서 군량이 없는 것

: 현지에서 조세 납부를 시도했으나 실패

→ 현지 지배의 실패. 많은 병력이 주둔한 한성의 군량 상황이 계속 악화. 일본에서 군량을 운송하여 한성까지 전달하는 일은 북쪽에서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

일본 : 군수물자에 대한 데이터

- 강화교섭 기간(전간기戰間期) 왜성(倭城 시오키성)에 주둔할 병력과 보관할 물품

文祿 2년(1593) 7월 27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보낸 명령서

→ 강화교섭기 일본군이 주둔하던 성에 상비할 물품을 상세히 지정. 보급 연구의 재료로 유용함

→ 물품, 소비량에 대한 비교연구 자료로 유용

→ 조선군과 명군은 (명의 家兵 제외) 국가의 병사. 따라서 개별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보급의 상세한(혹은 불문몰로 존재하는)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일본 : 도량형 비교

- 쌀 한 곡(斛)을 징수하는데, 우리나라의 관용 말(두斗)로 계산한다면, 일본의 한 곡(斛)이 25말(두斗)이 됨 (강항, 看羊錄)

* 일본의 京枰 : 종횡 14.8cm(4촌7푼) 깊이 8.1cm(2촌7푼) = 약 1.8리터

- 역관(譯官)으로 일본군에 협조하다 체포된 김덕회의 보고

: "군량은 전미(田米)로 날수를 계산하여 준다(軍糧則以田米, 計日上下)"

"적이 먹는 음식이 아주 적어서 쌀 한 되로 세 끼를 지공(支供)할 수 있으며

(賊之所食至少, 以一升米, 可供三時之用)"



결론 : 공유하고 싶은 문제

: 텍스트(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됨 - 실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 (허구의 공급) 도 있음.

: 극단적인(혹은 과장된) 데이터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소수의 한정된 사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각 국의 도량형과 나라별(지역별) 비교가 전제되어야 함. 당시의 비교 기록이 존재하나, 사료의 신뢰성 검토 + 기준 용량이 정확해야 할 것 + 부피와 무게의 문제. 무엇에 담아 어떻게 옮겼는가. 운송로의 상태는 어떠한가.

: 물품의 가격. 가격의 변동 양상을 파악해야 함. 각 시점의 환산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세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먹었나. 무엇을 먹었는가. 먹는 양은 상황에 따라 왜, 어떻게 변했는가. (인간은 먹는 것의 양과 질을 타협할 수 있다)

: 사료에 나타난 각 물품, 수량 데이터화 필요.

: 각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현재의 물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당시의 곡식 (쌀, 콩), 식재료(반찬), 동물(말 등) 먹이의 형태, 특성, 부피 등을 현재와 비교.

: 전쟁을 거치며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제2발표】

『吏文騰錄』 중에 보이는 朝·明 군수관계문서

스즈키 카이(메이지대)

『吏文騰錄』 중에 보이는 朝·明 군수관계문서

스즈키 카이(메이지대)

- I. 머리말
- II. 『吏文騰錄』 概況
- III. 咨文과 揭帖
- IV. 『吏文騰錄』중에 보이는 軍需關係文書
- V. 군수 양식 단위에 관한 하나의 문서
- VI. 『國書草錄』
- VII. 맺음말

I. 머리말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미흡했던 조명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 특징적이고 중국어의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여기서 필자는 임진전쟁기 조명관계연구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a) 명 중심의 국제질서는 있었을까?

기존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애매하다. 사람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보이고 같은 저작 내에서도 “명질서”나 “중화질서”를 설명없이 섞여 쓸 경우도 있다.¹⁾ 혹시 책봉체제론을 상정하고 있다면 그 학설은 중국, 조선, 일본, 베트남 등을 합친 동아시아세계론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국제전쟁이라는 임진전쟁 연구시각과 맞지 않을 것이다. 또 명에서 국초 형성된 국제무역을 조공과 일체화시킨 “조공일원체제”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것도 1567년 무렵 북건 漳州 月港이 개항으로 이미 그만두고 있었다.²⁾ 1571년 이른바 아르탄 봉공은 책봉과 동시에 조공에 의하지 않은 무역인 호시가 인정됐다.³⁾ 그랬기 때문에 임진전쟁 때 히데

1) 김영진, 『임진왜란』(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년)에서는 「명중심의 동아시아 질서」(18쪽), 「정통 동아시아 질서」(20쪽), 「중화질서」(80, 199쪽, 등)가, 각각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저자는 「이 연구는 원래 근대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한다(740쪽). 이런 관심이 임진전쟁 때 확실히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있었다는 선입관이 됐다면 「명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바로 만들어진 역사가 될 것이다.

2) “천조체제”라는 용어도 제기되긴 했으나 그 것은 명나라의 국내 통치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시 책봉은 호시는커녕 조공조차 허락하지 않다는 조치에 이르게 됐다.⁴⁾ 반면에 조명간에서는 책봉, 조공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93년 말 1594년 초에 의주에서 호시가 시작됐다.⁵⁾

그런 연구동향을 의식해서 그런지 명확하게 “책봉체제” “조공체제”라고 쓰지는 않지만 그냥 “명질서” 나아가 “명질서에서 청질서에 밝혔다”라는 식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⁶⁾ 명 중심의 국제질서는 이미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조명관계 실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오히려 그 것을 알면서 연구하고 있는 논자들에게 명확하게 의식해서 연구해 줄 것을 바란다.

b) 명나라 군제에 대한 연구 부족

이 점은 a)의 논점과 연관한다. 조명관계가 “명 중신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해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명 宗藩관계로 설명되고 말한다. 명나라 군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명군이 조선에 출병하게 됐을 때 군제가 어떻게 운영된지, 연구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에서 감찰업무를 맡는 각도의 巡按監察御史가 있는데 요동진에서는 순안산동감찰어사가 이를 담당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은 “遼東巡按”이라는 직명이 연구에서 빈번히 나온다. 명나라 관원 들을 직명으로 부르고자 하면 임진왜란 때 楊鎬는 山東布政使司계통의 감찰을 맡는 分守遼海東寧道, 줄여서 분수도라고 불려야 하는데⁸⁾ 모르게 쓴 경우가 많다.⁹⁾ 앞으로 여러 가지 통일 명칭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명나라 군제는 『대명회전』 등 기초 문헌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대사연구에서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을 부연해 둔다. 중국사연구자, 명대사연구자가 이런 측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진다.

또 양호와도 관련이 있는데 임진전쟁기 명나라 원군 배후에 鎮守遼東總兵官·署

3) 城地孝『長城と北京の朝政』(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年)218~221쪽.

4) 三木聡『傳統中國と福建社會』(汲古書院, 2015年)322쪽.

5) 辻大和『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汲古書院, 2018年)21쪽.

6) 桂勝範『朝鮮時代 海外派兵과 韓中關係』(푸른역사, 2009년)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명질서」(289쪽), 「명과 조선을 축으로 한 동북아의 명질서에 균열을」(291쪽), 「청질서」(298쪽) 등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엉망이다. 이 책은 직접적으로 임진전쟁을 다루지 않는데 저자는 「임진전쟁」의 용어를 제창한 정두희, 이경순 편저의 집필자의 한 분이고 이 책 중에서도 「임진전쟁」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58쪽).

7) 荷見守義「明代巡按山東監察御史の基礎的考察」(『人文研紀要』72、中央大學、2011年). 김영진, 앞의 책에서는 「요동순안어사 이시자(李時孳)」(91, 114, 808(주192)쪽, 등)로 계속 나온다.

8) 정확하게 쓰면 欽差分守遼海東

寧道兼理邊備屯田·山東布政使司右參議이고, 나중에 欽差分守遼海東寧道兼理邊備屯田·山東按察司副使兼布政使右參議가 됐다. 분수요해동녕도는 명 정통년간(1436~1449), 分司를 廣寧과 遼陽에 설치하고, 광녕에서는 산동포정사의 參政이나 參議 一員이 파출해서 糧儲를 總理하고, 요양에서는 산동안찰사의 副使나 僉使 一員을 파출하여 詞訟을 오직 처리시켰다. 荷見守義『明代遼東と朝鮮』(汲古書院, 2014年) 77쪽을 참조. 양호의 경우 산동안찰사와 포정사의 관을 둘다 겸하게 된 것이다.

9) 『宣祖實錄』 등에서는 점점 「遼東布政(使司)」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건 명나라 관제에서는 원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김영진, 앞의 책에서는 「분수도도사(分守道都司)」(106쪽), 「참정 황응양(黃應陽)」(114쪽, 참정은 參政? 參將에 오기? 陽은 暘?), 「참봉(參奉) 풍중영(馮仲纓)」(273쪽, 참봉은 명군에 존재하지 않음) 등 이상한 직관 이름이 나타난다.

都督僉事の 직·관을 맡은 李成梁과 그 일문의 존재가 있었다는 언급이 거의 없는 것도 정말 이상하다. 그가 만력19년(1591)부터 26년까지 요동총병을 이임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아들 이여송이 평양전투에서 벽체관전투까지 보인 태도는 이성량 등이 요동에서 여진과 싸울 때 쓴 전법과 거의 비슷하다. 이성량에 대한 연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¹⁰⁾ 조명관계에 대한 언급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성량과 그 일문에 대한 반발은 반발은 남북장병의 대립으로 알려진 명 원군 내의 대립구도와도 깊이 관련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c) 조선의 인식과 대응

명의 국제질서 존부, 명나라 군제와 그 운용실태를 밝힌 다음에, 비로소 조선의 대응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임진왜란 당초의 복잡한 조명간의 관원왕래와 그에 따른 조선 측의 영접체제의 문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하여 조선연행사의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명나라에 대한 조선조천사가 파견됐는데 빈번한 사절 파견은 16세기, 종계변무문제에 관한 교섭이나, 16세기 조명 조공무역의 성행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천사의 활동은 명나라 정치동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책 들을 논의한 비편사를 비롯한 조선조정의 의사결정과정도 어떻게 되어 있었고, 전후에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은 조선의 군령계통이나 관군재건과정을 살피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또 의병연구와 연결할 길을 열릴 수도 있다.

필자는 이상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명외교문서집인 『吏文臚錄』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 종사해 왔다. 그래서 먼저 이 자료에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II. 『吏文臚錄』 概況

유감스럽게도 조명관계는 외교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다. 다행히 이미 알려진 송응창『경략복국요편』, 『사대문궤』와 같은 외교문서집의 번역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¹¹⁾ 앞으로 그런 상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외교문서를 연구로 이용하려면 문서들의 분류와 정리,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인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새로 알려진 장서각 소장『이문등록』을 정리한 것이 표1이다.

10) 和田正廣『中國官僚制の腐敗構造に關する事例研究』(九州國際大學社會文化研究所, 1995年), 杉山清彦「漢軍旗人 李成梁一族」(岩井茂樹編『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4年).

11) 송응창 지음, 구범진 외 옮김『명나라의 임진전쟁』1-5(사회평론아카데미, 2020~2021년), 이정일 역음『편역 사대문궤』1-3(동북아역사재단, 2020년~간행중).

『이문등록』현존14책은 총1,077丁, 문서총수는 1,290점이다. 문서수는 부속문서라고 생각되는 邸報, 數目 등을 하나로 보고 좀 많게 센 것이고 추후의 수정을 바란다. 표1을 보다시피 제1책이 문서수가 적고 咨文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문등록』은 각책마다 필사상태의 차이가 많은 편이다. 여러가지 붙임쪽지, 필기 지시 중에 뜻 불명일 경우도 있다. 수록연월 점에서 생각하면, 제5~7책, 제9~11책, 제12~13책이 관련이 깊게 보인다. 제12~13책은 등사한 사자관에 관한 「○字○○張 [寫字官名] 書」라는 표기도 똑같다. 그리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제11~13책은 각 72정, 제10, 14책은 각101정으로 같은 분량이었다.

전래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둔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표2에 묶었다. 『이문등록』이 전15책이 편찬된 것은 1621년12월 이후였다. 1800년에 신설된 창덕궁 大報壇 敬奉閣에 봉안되게 됐다. 1908년, 대보단 제사가 폐지되고 그 「基址」가 宮內府에서 「保管」되게 된 이후,¹²⁾ 『이문등록』은 행방불명이 된 것 같다. 다시 발견된 것은 문화재관리국 정리스트티커가 붙인 1962년이었고, 그 때는 제1책이 유실되고 말았다. 자세는 마지막 별표를 참조.

그 과정을 염두에 두면 지금 볼 수 있는 화상 중 일본 도쿄대학 소장 田川文庫 寫眞版은 문화재관리국 관리 중, 1962년 이후에 촬영, 장서각 사이트 공개 PDF은 그 이후 1971년4월 전후에 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사대문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중요한 사료인데도 일본 식민지학자 들의 조사에서 누락됐고 오래 동안 서가에서 계속 잠을 자게 됐던 것이다.

Ⅲ. 咨文과 揭帖

『이문등록』중 주요한 문서는 咨文과 揭帖이다. 먼저 咨文에 대해서 森平雅彦은 高麗忠烈王6年(1280), 忠烈王이 征東行省 丞相이 된 것은 계기로, 高麗王—元朝 中書省 간에서 咨式外交文書가 주고 받게 되고, 고려와 명, 조선과 명으로 물려받게 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¹³⁾ 咨文이란 明清에서는 二品 이상의 고급관청·관인 간에서 주고 받은 문서이고, 조명간에서는 조선국왕과 예부나 병부 사이에서 주로 사용됐다. 문장 중 조선국왕은 「當職」이라는 일인칭으로 나타나는데 그 것은 명에서 책봉된 조선국왕 位라는 번직을 가리킨다고 보인다.¹⁴⁾

그 이문을 엮은 책이『吏文』3권3책이고 그 註解가 中宗34年(1539) 성립 『吏文輯覽』이다. 崔世珍은 『于公奏議輯覽』『駁稿輯覽』등을 따로 만들었다.¹⁵⁾ 이문의 어휘나 용

12) 『純宗實錄』1908年(隆熙2)7月23日條.

13) 森平雅彦『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名古屋大學出版會, 2013年) 248, 262~264쪽.

14) 森平雅彦, 앞의 책, 256쪽.

15) 그 개요는 일단 安秉禧『國語史資料研究』(文學과 知性社, 1992年) 371~395쪽을 참조. 또 檀上寬「朝鮮王朝編『吏文』收載の「榜文」に見る明初の對外政策」(夫馬進編『中國明清地方檔案の研究』文部省科學研究費國際學術共同研究報告書, 2000年), 同『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年) 第七章은, 『吏文輯覽』의 註解가 明宗9年(1554) 甲寅字本과 보이는『增定吏文輯覽』에

법은 언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이문이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은 너무 달라질 수 있다.¹⁶⁾

다음에 揭帖인데 『吏文統集輯覽』에서는 「[揭帖]文書名, 詳見駁稿解」로 있고,¹⁷⁾ 『增定駁稿輯覽』卷上을 보면

各衙門及里老旗甲人等, 行本管及該監, 臨司府州縣衛所等衙門之文. 又上亦可行於下. 但不排衙. 只開年月. 一說, 五府六部等衙門, 將明早合奏事件, 會定一起二起, 預寫小帖, 至奏事時, 各衙門堂上官一人, 執着手中, 跪地口說. 亦謂之揭帖.

라고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 것 같다. 「年月」을 적은 뿐이라고 하는데 『吏文騰錄』, 『사대문귀』 등에 수록되는 게첩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¹⁸⁾ 이 사례도 이문어휘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른다. 게첩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해설이 더움이 될 것이다.

그 姓名未詳의 割合가 많은 이유는 당시의 풍습, 서면에는, 자기의 氏名을 적지 않고, 따로 명함을 덧붙였다, 그런 경우 「名別具」라든가 「名不具」라고 알렸는데 명함은 첨부되지 않는 한, 쉽게 분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존되지 않은 모양이다.¹⁹⁾

그 설명은 20세기 초 청말 중국 서간(尺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기 성명은 제일 마지막에 쓰니까, 그 쓸 방법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자기 성명을 그대로 쓰고, 더 하나는 자기 성명 대신으로 「名別具」라든가, 「名正具」 또는 「名正肅」 등으로 쓰고 자기 명함을 한 장 狀袋 중에 동봉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 두 개 방법 중, 어느 쪽이 정녕인가 하면, 名別具 등을 써서 명함을 첨부하는 편이 鄭重이기 마련이다.²⁰⁾

이르러 수정된 사례를 소개한다.

- 16) 鄭光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漢吏文」과 「朝鮮吏文」을 구별하고 있다. 鄭光(廣剛, 木村可奈子譯『李朝時代の外國語教育』(臨川書店, 2016年)26, 41쪽을 참조. 다만 조명간에서 실제로 외교문서가 주고 받은 국면을 고려하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정광이 말한 「漢吏文」은 기본적으로 이문이라고 쓰기로 했다.
- 17) 前問恭作(末松保和編)『訓讀吏文』(國書刊行會, 1975年)所收, 375쪽 참조. []는 『訓讀吏文』의 표기 그대로 썼다.
- 18) 「駁稿」는 弘治5年(1492)刊行의 王槩『王恭毅公駁稿』로 보인다. 「馬船附妄加參語」에 「田聚明招, 假寫田太監揭帖, 齎赴兵部車駕司, 與郎中童瑄, 詐說」이라고 있다. 그 이외 게첩 사례는 줄저『明清交替と朝鮮外交』(刀水書房, 2021年)174~175쪽에서 든 각종 연구를 참조.
- 19) 朝鮮史編修會『朝鮮史料叢刊第四唐將書帖・唐將詩畫帖解說』(『朝鮮史料叢刊第四唐將書帖・唐將詩畫帖』朝鮮總督府, 1934年)5~6쪽. 집필은 中村榮孝라고 추측되는데,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69年)所收「柳成龍家の壬辰・丁酉倭亂史料」의 「三 『唐將書帖』と『唐將詩畫帖』」과는 문장이 다름.
- 20) 靑柳篤恒『支那時文規範』(博文館, 1907年)212쪽. 이 부분은 「第三章 支那時文各衙門の講說」의 「第八節 尺牘」에 「(參考)」로 적은 것이고, 16세기 말 게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명칭시대에 있어서 명함의 역할에 대해서는 岸本美緒『風俗と時代觀』(研文出版, 2012年)所收「名刺の効

森萬佑子は「狀袋 중에 동봉하고」를 「袋の中に同封して」라고 읽었는데²¹⁾ 「狀袋」(쥬부쿠로)는 袋(후쿠로)가 아니라 서간을 싼 封筒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吏文臚錄』에는 駢儷文을 포함한 조선국왕의 표전도 수록된다. 그 것은 「吏文」이 갖는 의미가 문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명외교관계문서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IV. 『吏文臚錄』중에 보이는 軍需關係文書²²⁾

『吏文臚錄』제2책은 첫번째 문서부터 여섯번째 문서까지 송응창과 조선국왕 간에 서 주고 받은 자문이고 그 다음부터 명군의 진격에 따른 군수관계문서가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다음 두 개의 문서를 소개하면서 『吏文臚錄』이 군수관계연구에도 유용 일 것을 밝히고자 한다.

二-7 傳[廷立]咨朝鮮國王 萬曆21年5月 日

二-8 朝鮮國王咨委官原住²³⁾備禦·都指揮[傳廷立] 萬曆21年5月初6日

傳廷立咨文(二-7)에서는 遼東都指揮使張三畏이 조선에서 식량과 교환하기 위한 물품이 내 번에 나눠 수송될 것이 적혀 있었다. 그 물품의 내역은 각색 명포, 각종 모자, 신발(靴, 鞋) 등이다. 그 중 「兀喇鞋」는 烏喇鞋인 듯하다. 오라혜는 소가죽으로 만들고 녹색 雲頭가 장식되고 안쪽에는 건초가 배접해 있었다.²⁴⁾ 이 중 건초가 松花江 유역 오라 지방 원산일지 아니면 그런 신발이 원래 이 지방 특산품이기 때문에 오라(烏拉·烏喇)의 명칭이 붙었을 것이다. 「兀喇靴」나「兀喇鞋」는 모자와 함께 방한용이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의 수송이 傳에게서 張三畏에게 보고됐다. 傳廷立咨文(二-7)소수의 姜大虎, 申鴻漸의 각책에는 각색명포로 1疋, 모자로 1頂, 신발로 1雙 당의 미곡과의 교환비율도 기재되어 있다. 그 것을 엮은 것이 표3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쌀이 콩의 두 배 가격으로 명군에 사들였고, 조는 그 중간으로 가격성정하게 됐다. 또 명군이 가져온 물품을 보면 각색 명포 중 홍포와 백중포가 동액으로 가장 싸고 그 다음에 남포, 청포 순으로 올라간다. 이상을 바탕으로 傳의 咨文(二-7)소수의 각책을 원안으로 하고, 宣祖回咨(二-8)에 보인 수정안을 미곡으로 환산하고 비교한 것이 표4이다.

用」을 참조.

21) 森萬佑子「天津から見る朝鮮の「交隣」」(岡本隆司編『交隣と東アジア』名古屋大學出版會, 2021年)244쪽.

22) 본 절 내용은 줄고「韓國學中央研究所藏書閣所藏『吏文臚錄』と壬辰戰爭研究の可能性」(川西裕也·中尾道子·木村拓編『壬辰戰爭研究の新天地』東京大學出版會, 2023年)으로 발표예정임. 다만 일부 가필한 데가 있음.

23)任이 맞음.

24)周汎·高春明編著『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6) 316쪽.

地区	品种	青布 (疋需)	红布 (疋需)	蓝布 (疋需)	白中布 (疋需)	麻帽 (顶需)	制帽, 羊毛帽 (顶需)	瓦碗靴 (双需)	瓦碗鞋 (双需)
平壤	大米	306石10斗 (5斗)	26石 (2斗)	-	-	-	-	-	-
同域	大米	-	-	454石 (3斗)	16石 (2斗)	413石7.5斗 (1.5斗)	21石10斗 (1斗)	11石1.5斗 (1.5斗)	12石4斗 (0.8斗)
平壤	小米	172石 (6斗)	-	-	-	-	-	-	-
同域	小米	-	56石 (3斗)	862石10斗 (4斗)	26石9斗 (3斗)	58石5斗 (2.5斗)	46石10斗 (2斗)	31石5斗 (2斗)	22石10斗 (1斗)
平壤	豆	444石9斗 (9斗)	-	1,114石12斗 (6斗)	-	150石 (3斗)	100石 (2.5斗)	96石12斗 (3斗)	28石12斗 (1.6斗)
同域	豆	-	86石10斗 (4斗)	-	65石13斗 (4斗)	-	37石7.5斗 (2.5斗)	-	-

※ 1石=15斗 1斗=10升

表3 姜大成, 申海渐各得的 食糧收買案 (傳廷立者 吏二·7)

地区	大米	小米	豆	他項計
平壤	332石10斗	172石	1,935石	2,439石10斗
同域	556石8斗	1,104石4斗	190石0.5斗	1,850石12.5斗
合計	888石3斗	1,276石4斗	2,125石0.5斗	4,289石7.5斗

A 原案 (表4 量 暫定額)

地区	大米	小米	豆	他項計
平壤	348石10斗	198石9斗	2,000石13斗	2,548石2斗
同域	539石8斗	1,077石10斗	124石2.5斗	1,741石5.5斗
合計	888石3斗	1,276石4斗	2,125石0.5斗	4,289石7.5斗

B 修正案 (宣相回書 吏二·8)

表4 五月初七日時點到着分食糧收買修正案 (宣相回書 吏二·8) 과 原案의 比較

임경준이 지적한 듯이 그 당시 청포1필당은 3전 5푼, 남포 1필당 2전 2푼, 유모 1정당 8푼, 양모모 1정당 4푼 5리였고,²⁵⁾ 국내에서 은을 교환수단으로 쓰지 않는 조선을 위해 명군이 요동에서 은과 청포 등 물품을 교환하고, 조선에서 물품과 식량을 교환하고 있었다.²⁶⁾ 그래서 이번 무역에서도 명군이 먼저 요동에서 은을 써서 물품을 사든 다음에 조선에서 식량과 교환하게 된 것이다. 이상을 총합해보면 다음 표5와 같이 가격표를 만들 수 있다.

物品1個當	銀1錢當	米1斗當
靑布1疋：銀3.5錢：米5斗	靑布0.28疋：米1.42斗	靑布0.2疋：銀0.7錢
藍布1疋：銀2.2錢：米3斗	藍布0.45疋：米1.36斗	藍布0.33疋：銀0.73錢
紅布/白中布1疋：銀0.9錢：米2斗	紅布/白中布1.11疋：米2.22斗	紅布/白中布0.5疋：銀0.45錢
絨帽1頂：銀0.8錢：米1.5斗	絨帽1.25頂：米1.87斗	絨帽0.66頂：銀0.53錢
羊毛帽1頂：銀0.45錢：米1斗	羊毛帽2.22頂：米2.22斗	羊毛帽1頂：銀0.45錢
兀喇靴1雙：銀0.8錢：米1.5斗	兀喇靴1.25雙：米1.87斗	兀喇靴0.66雙：銀0.53錢
兀喇鞋1雙：銀0.36錢：米0.8斗	兀喇鞋2.77雙：米2.22斗	兀喇鞋1.25雙：銀0.45錢

※小數點3桁以下切捨

표5 명군 군량의 교환비율

그런데 조선에서는 宣祖25년(1592)5월, 明軍1인당 하루 1升5合, 6월에는 더 감액 해서 1승을 지급할 상정이었다.²⁷⁾ 『宣祖實錄』25年10月壬子(26日)條에서는 명나라 1승 5합은 조선의 2승 7합에 준한다고 나온다. 그래서

$$1.5(明)升 : 2.7(朝鮮)升 = 5 : 9$$

로 되고 명나라 1승은 조선의 5분의 9, 즉 1.8배가 된다.

명나라 衛所軍은 所屬衛를 떠나 타 지역에 동원되게 되면 原衛에서는 가족에게 月糧이 행선지에서는 본인에게 行糧이 지급된다. 行糧 액수는 명 宣德年間(1426~1435)부터 큰 변함없이 軍士1인당 하루 1승5합, 한 달 4斗5승이 기준이고, 馬1匹당 하루 料4升 및 草1束이었다²⁸⁾. 명군은 募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액수는 衛所軍에 준했다고 본다. 5~6월의 1승5합은 명나라 단위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명군이 과중한 부담을 강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V. 군수 양식 단위에 관한 하나의 문서

조명간의 단위문제는 지금 본 바와 같이 딱 정해져 있던 까닭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25) 『사대문과』권3(제23정), 만력21년정월27일자 장삼외 「緊急倭情」咨文.

26) 林慶俊「壬辰戰爭과 靑布·藍布」(『中國學報』101, 韓國中國學會, 2022年) 438~439쪽.

27) 六反田豊「文祿·慶長の役(壬辰倭乱)開戦初期における朝鮮側の軍糧調達とその輸送」(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編『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一期第二分科篇,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 2005年) 238~239, 243쪽.

28) 奥山憲夫『明代軍政史研究』(汲古書院, 2003年) 297~312쪽.

『이문등록』제8책은 만력28년 10~11월 쯤의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宣祖 33年年(1600)은 임진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류했던 명군이 완전철퇴한 해이다. 『사대문계』권37이 같은 해 9월초9일까지의 조선국왕자문을 수록하고, 권38~41이 결권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가치 높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소개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八-44 備倭朝鮮直隸永平府通判陶良性揭帖 (장서각PDF5-80)

제8책 제21정부부터 제 24정 걸면까지 대략 3정반이라는 긴 게첩이다. 앞으로 조선이 해야 할 선호책을 「六款」에 걸쳐 적어 있다. 이 게첩은 『宣祖實錄』33年11月辛亥(11日)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通判陶〈良性〉移揭。其略，一曰，修險阨，二曰，築城池，三曰，造戰船，四曰，備器械，五曰，整衣甲，六曰，增烽堠。以上六款，誠力行之。禦倭之術，已不外此。但朝鮮，有一積病。今應亟救者，何也。天下未有當兵無糧而久戍者。亦未有獲功無賞而捐軀者。且臨急調取農民，自負糧食而至，食盡即回，此可以言兵乎。仕官大家，俱不當兵。惟小戶奴家當兵，而拘於國制，不得授官。雖斬獲名酋多級，不過賞布數匹而已。此可以鼓人用命爭先乎。武功之不振，良有根曲。不可一一救藥也。a本國既不用銀，b每兵月給食米四斗五升，歲給衣布六匹，綿花四斤，夏衣布三匹，斯可以練矣。凡獲軍功者，不論斬絞軍徒，一體陞官，不欲者，賞銀五十兩。人斯勇於立功矣。如此而武功不振者，未之有也。要在本國必行也。傳于左副承旨黃廷詰曰，謄書下該司，此本還入。

그 중의 「其略，一曰」부터 「六曰」까지가 『이문등록』에서 또 자세히 나오고 있다. 『宣祖實錄』과의 관계가 시사되는 사례로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문장 중 밑줄 부분은 『이문등록』에서는 「查照中國事例，B每兵月給食米四斗五升。以斗小四斗五升，方足一兵之食也。A本國既不用銀，每兵歲給冬衣布六疋[下略]」라고 되어 있어서 의미가 너무 다르다. 두량성이 말한 「병사마다 한 달에 양식 4두 5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명나라 한 달의 행양에 상당한다. 그런데 「斗의 작은 것으로 4두5승이더라도, 병사 한 사람의 음식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이어진다.

「斗의 작은 것」이라는 표현은 조선의 작은 말 단위를 가리키지 않았을까? 말이 작아도 된다는 두량성의 발언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명의 단위 차이가 융통성있게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보일 수 있다.

두량성은 浙江 處州府 縉雲縣 출신, 강남의 사정은 물론, 永平府에 있으면서 北京 측의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通判은 知府를 보좌하고 특히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 발언은 어느정도 가치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I. 『國書草錄』

『吏文臚錄』 전래과정을 찾아서 文化財管理局藏書閣『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探求堂, 1972年)을 봤더니 藏書閣所藏『國書草錄』(K2-3468)이라는 사료에 부딪혔다. 「內容： 宣祖 25年 壬辰倭亂 관계로 明나라 側에 發送한 圖²⁹⁾書의 草錄임」이라고 나왔다. 혹시 잃어버린 『吏文臚錄』제1책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원본조사를 해봤지만 확실히 단정하기 어려워 보였다.

먼저 표지 상태인데 『吏文臚錄』제13책과 비슷하게 새로운 표지가 장정되고 있었다. 뒷 표지 안면에 「西紀一九七一年三月 / 藏書閣再裝」이라고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원래 표지인데 아무런 문양이 없는 종이가 되어 있고 「國書草錄」이라는 글씨도 「吏文臚錄」과 다른 느낌이 든다. 크기는 필자의 실측으로 세로35.4cm×가로23.8cm이고 『吏文臚錄』각책과 거의 똑같다. 하지만 「國書」도 「草錄」도 조선시대 서명에서 자주 쓸 단어가 아닌 것도 마음에 걸린다. 「欽差」와 같이 셋 자 대두하면 윗 부분에 여백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吏文臚錄』과 함께 편찬된 사료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장서각 공개 PDF를 보면 제1정은 안면밖에 없어서 제2정부부터가 되는데 『吏文臚錄』과 비슷하게 오른 쪽 끝에 위부터 「五」를 제거, 「一」「二」라고 적혀 있다. 「一」은 제第一冊, 「二」는 제2정을 의미 하면 『吏文臚錄』제1책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리고 『吏文臚錄』에 보이지 않는 5.2cm사방의 「藏書 / 閣印」이 찍혀 있다. 『吏文臚錄』제1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너무 가까운 자료라고 볼 수 있다. 『吏文臚錄』과 같은 식으로 소수문서를 분류하면 표6과 같다.

收錄文書年月日	文書種別						計	丁數
	◎	◎	◎	◎	其他			
	差 關	差 批	咨 文	冊	牌			
萬曆20年10月27日 ~ 21年正月初1日	1	1	29	20	12	啓1, 未詳1, 批1	66	75

표6 『國書草錄』所收文書構成

咨文 외에 牌나 冊이 사용되어 있어서 임시적인 외교가 전개된 1592년의 조명교섭을 반영된 것 같다. 그 중에도 군수관계문서가 수록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사료를 보지 않으면 그 시기의 연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소개한 해설과 같이 명나라 측에서 발송한 국서뿐 아니라 조선에서 발급한 문서도 여러가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래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둔다. 藏書閣 소장서책을 관리했던 文化財管理局는 1968년 7월 24일에 문교부에서 문화공보부로 그 소속이 변경됐다. 1969년11월5일 대통령령으로 藏書閣事務所가 신설됐고 장서정리가 목록과 분류의 양면에서 진행되게 됐다. 먼저 1971년1월 현재의 略式目錄으로서 『藏書閣所藏古

29) 國이 맞음.

圖書目錄』이 작성됐다. 이 목록에서는 『國書草錄』이 보이고 분류도 동일하긴 하지만 『吏文騰錄』, 『槐院騰錄』과는 약간 떨어져 나온다. 이미 언급한 1971년1월부터 1972년5월말까지의 시간을 걸러서 작성한 文化財管理局藏書閣『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探求堂, 1972年)에 일러서 조금 가까이 된다.³⁰⁾ 그 관계는 표7과 같다.

『古圖書目錄』 ^{*1}	(對應關係)	『總目錄』 ^{*2}
(97) ^{*3} 吏文騰錄(部數) 1 (冊數) 14 (版種)寫	↘ ↙	(5) ^{*4} 槐院騰錄(2-3465)12冊存(卷13, 1冊缺)
(107) 皇明時槐院騰錄(部數) 1 (冊數) 11 (版種)寫	↘ ↙	(8) 國書草錄(2-3468)
(129) 皇明時槐院騰錄(部數) 1 (冊數) 1 (版種)寫	↘ ↙	(37) 吏文騰錄(2-3497)不分卷(卷1, 13, 2冊缺)
(272) 國書草錄(部數) 1 (冊數) 1 (版種)寫	↘ ↙	

*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藏書閣所藏古圖書目錄』(上, 1971年)

*2 文化財管理局藏書閣『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探求堂, 1972年)

*3 吏部-政書類, 騰錄, 卷의 수록순, 97번째에 수록됨

*4 吏部-政書類 外文·通商의 수록순, 5번째에 수록됨

표7 目錄上的 『吏文騰錄』 등의 記載

文化財管理局의 1962년 정리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藏書 / 閣印」이 찍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 해부터 『吏文騰錄』, 『槐院騰錄』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스티커의 「번호」와 『藏書閣所藏古圖書目錄』의 수록순을 비교한 것이 표8이다.

	文化財管理局 (숫자차이)	『古圖書目錄』收錄順 (숫자차이)
『吏文騰錄』第一五冊	4 2263	97
『槐院騰錄』第一一冊	4 2274 (+11)	107 (+10)
『槐院騰錄』第一冊	4 2296 (+22)	129 (+22)
『國書草錄』	4 2727 (+431)	272 (+143)

표8 文化財管理局 整理스티커와 『古圖書目錄』收錄順

文化財管理局(1962), 『藏書閣所藏古圖書目錄』(1971)의 순번이 되는데 『吏文騰錄』全十五冊、『槐院騰錄』十一冊、同 第一冊은 거의 변함없이 보관됐고 정리번호가 붙이게 됐다고 본다. 그에 반하여 『國書草錄』은 원래 『吏文騰錄』『槐院騰錄』과 떨어져서 보관되고 있었고 『藏書閣所藏古圖書目錄』단계에서 보관상태가 밖혔을 지도 모른다.

Ⅶ. 맺음말

조명관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임진전쟁” 연구에서는 과제가 많다. 먼저 명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슨 뜻인지 대단히 애매하다. 그리고 명나라 군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 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적어도 명대사 연구의 성과는 반

30) 이상, 장서각 장서목록 작성에 대해서는 千惠鳳「藏書閣의 歷史」(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編輯『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年)85~88쪽을 참조.

영될 필요가 있다. 임진전쟁 당시 조선 위정자 들도 명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야 조선의 대응의 역사적 의미가 밝힐 것이다.

임진전쟁기 조명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명외교문서의 이용이 불가결이다. 장서각소장 『이문등록』은 그런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료의 하나이다. 현존14책은 총1,077丁, 문서총수는 1,290점이 된다. 주요한 소수문서는 자문과 계첩인데 자문은 소위 이문이라는 특수한 문체로 쓰인 조선국왕과 명의 고급 관청, 광인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이다. 한편으로 계첩은 중국 서간체로 쓰인 조명간 외교문서인데 자문과 비교하여 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문등록』은 제2책의 문서와 같이 군수관계문서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명나라는 조선에 병사 1인당 하루의 1.5승의 군량 준비를 부탁했는데 그 액수는 명나라 위소군의 하루의 행량과 똑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선조33년(1600)의 한 계첩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명나라 단위와 조선 단위가 적당하게 가려 썼을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다.

『이문등록』의 전래과정을 찾아봤더니 선조25년의 조명외교문서를 수록한 『국서초록』이라는 사료를 알게 됐다. 잃어버린 『이문등록』제1책일 지도 모르지만 아직 심중히 봐야 할 상태이다. 1962년 문화재관리국 조사로 알제 된 사료일 것이다. 명국참전 당초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꼭 봐야 하고 군수관계문서도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이런 외교문서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진전쟁 모습을 그려내야 할 것이다.

年	『吏文騰錄』에 관한 일들	관계된 장서각 동향
光海君13年 (1621)	12月以降, 全十五冊으로 編纂	奎章閣創建, 奉謨堂에 列朝御製 등을 奉安 (正祖即位年9月25日)
↓	昌慶宮承文院, 慶熙宮承文院 어느 쪽에 서 보과?	
英祖45年 (1769)	12月以降, 昌慶宮欽奉閣, 慶熙宮敬奉閣 어느 쪽에 이과?	
正祖24年 (1800)	5月初10日, 『槐院騰錄』과 함께 大報壇敬奉閣에 奉安	
1908年 (隆熙2)	7月23日, 大報壇祭祀 廢止, 基址는 宮內府 管轄이 됨. 奉安資料도 같이 管理? 以降, 第一冊이 遺失, 『槐院騰錄』卷一은 別置	
1921年 (大正10年)	3月22日, 新濬源殿이 완성	
↓	王室圖書 一部로 保管?	
1962年	文化財管理局 整理作業으로 再發見	
1971年	1月, 全十四冊으로 文化財管理局 目錄에 게재. 4月, 第一三冊表紙再裝	
1972年	10月10日, 文化財管理局 目錄에 第一三冊도 缺으로 게재. 『槐院騰錄』卷一 別置는 解消	
1981年	11月2日, 藏書閣圖書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移管	李王職圖書室發足 (1911年2月1日) 李王職圖書室移轉 (1915年12月) 圖書室書庫에 「藏書閣」의 扁額 (1918年2月27日) 李王家博物館 轉出에 따라 再移轉 (1936年6月5日) 韓國精神文化研究院開院 (1978年6月30日)
2005年	2月1日,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韓國學中央研究院에 改稱	
2011年	藏書閣이 新築開館	

【제3발표】

임진전쟁기 明軍의 군수체계와 중국산 면포

임경준(동국대)

임진전쟁기 明軍의 군수체계와 중국산 면포*

임경준(동국대)

- I. 머리말
- II. 明軍의 임진전쟁 참전과 중국산 면포
- III. 조선으로 유입된 중국산 면포의 용도
- IV. 맺음말

I. 머리말

1587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征明嚮導, 즉 '明朝를 정벌하는데 길을 안내하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입한 데서 촉발된 '壬辰戰爭'¹⁾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각도에서 중후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왔다. 주요한 문제관심에 따라 분류한다면, (1) 전쟁사의 관점에서 임진전쟁의 발발과 전개·강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연구, (2) 국제정치의 시야에서 임진전쟁을 조선·명조·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파악하는 연구, (3)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임진전쟁이란 사건이 동아시아와 그 주변 국가에 미친 파급 효과에 주목한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²⁾ 한·중·일만이 아니라 구미 학계에서도 독자적 연구 성과가 견실하게 축적되

* 본 발표문은 줄고 「壬辰戰爭과 靑布·藍布—明軍이 朝鮮에 가져 온 중국산 면포」, 『중국학보』 101, 2022를 학술대회 취지에 맞게 가필·재구성한 것이다.

- 1)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여 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日本의 朝鮮 침공에 대하여 그간 한국학계에서는 '壬辰倭亂'이나 '丁酉再亂'이란 용어로 통칭해왔고, 중국과 일본학계에서도 각자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萬曆朝鮮之役'이나 '文祿·慶長の 役'으로 다르게 호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학술적으로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면서 근래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壬辰戰爭"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7년간의 전쟁을 범칭하려 한다.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2008. 임진전쟁을 둘러싼 호칭의 변천에 관해서는 최근 川西裕也, 「『文祿慶長の 役』呼稱の再検討」, 『韓國朝鮮文化研究』 21, 2022가 20세기 이후의 학설사를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 한편 한국학계에서 임진전쟁이란 용어를 선구적으로 사용한 연구자로는 김경태와 차혜원을 들 수 있다.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 차혜원, 「중국인의 '南倭' 체험과 壬辰전쟁(1592-1598) - 『籌海圖編·重編』을 중심으로 -」, 『역사학보』 221, 2014.
- 2) 지면의 제한상 모든 연구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한·중·일 그리고 구미학계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임진전쟁 연구사 논문들을 소개하는데 그친다. 六反田豊 외,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 中野等, 「文祿·慶長

어 왔을 뿐더러 개별 연구자 간의 국제적 교류와 집회도 활성화되면서 전쟁 자체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확정은 물론 국가별로 상이했던 역사적 평가도 점차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³⁾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역사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근본 사료의 영인·역주 또한 한·중·일 삼국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⁴⁾ 현시점에서 ‘임진전쟁’은 특정 국가와 학계를 넘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척되고 있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진전쟁을 둘러싸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견실한 연구 성과 위에 축조된 기왕의 역사상에 대하여 구태여 벽돌을 하나 더 보탬 필요가 있을까 하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임진전쟁에 관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전쟁 자체의 추이와 여파 혹은 전략이나 전술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나머지 정작 전쟁의 실제적 측면 - 전쟁에서 군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입었는지, 나아가 전시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군수물품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소비했는지 - 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⁵⁾ 물론 이와 관련하여 임진전쟁 시기 明軍이 본국에서 糧餉을 어떻게 수송하였는지에 관해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가 일부 제출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수송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파병군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군량을 지속적으로 명에서 조선으로 직접 운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진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저마다 판이한 재정제도에 기반을 두고 전쟁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明朝와 朝鮮의 군대는 같은 연합군이라 하더라도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7년간에 걸친 전쟁의 추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⁷⁾ 군수체계의 충돌이란 관점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⁸⁾

의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 Nakano Hitoshi, "Research Trends in Japan o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Imji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2, 2013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아울러 앞서 언급한 川西裕也, 「『文祿慶長の役』呼稱の再検討」, 『韓國朝鮮文化研究』 21, 2022도 임진전쟁의 호칭을 검토하면서 관련연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구미권의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Namlin, Hur, "Works in English on the Imjin War and the Challenge of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2, 2013을 참조.
- 4) 한국학계에 한정하여 근래의 특기할만한 성과로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주도하여 출간된 『瑣尾錄』과 『經略復國要編』의 역주본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하기 시작한 『事大文軌』의 편역본을 들 수 있다. 각각 오희문 지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쇄미록』 1-6,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송응창 지음, 구범진 외 옮김, 『명나라의 임진전쟁』 1-5,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2021 ; 이정일 외 옮김, 『편역 事大文軌』 1-3, 동북아역사재단, 2020-2021로 출간되었다.
- 5) 김경록은 종래의 임진전쟁 연구가 분야별로 편차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 동원체계, 군수체계, 군량체계를 비롯한 전쟁사의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p.110.
- 6) 李章熙, 「壬亂中 糧餉 考」, 『金學煥教授 華甲紀念論叢』, 1971 ; 張學根,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 論議」, 『임난수군활동논총』, 1993 ; 洪性鳩, 「丁酉再亂時期明朝의 糧餉海運」, 『新亞學報』, 2017 ; 陳尙勝, 「壬辰禦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4, 2012 ; 張洋洋, 「丁酉戰爭時期邢玠關於明軍 糧餉問題的措施研究: 以『經略御倭奏議』為中心」, 『渤海大學學報』 6, 2019 ; Hong, Sung Ku, "Ming dynasty maritime provisions transport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East Asian War (1597-98)", *Chinese Studies in History* 52, 2019.
- 7) 임진전쟁 당시 조선·명조·일본 간 재정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학자 須川英徳가 요령있게 개관하고 있다. 스가와 히데노리(須川英徳), 「동아시아 해역 국제경제 질서와 임진왜란」, 이성무 외 엮음,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명조는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전국 규모로 은을 세수로 징수하는 재정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군사비의 지출과 운용 역시 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⁹⁾ 반면 조선에서는 물품화폐인 布貨, 즉 綿布와 麻布가 국가재정과 민간의 교환경제 영역에서 화폐로서 기능하는 현물경제가 정착해 있었다.¹⁰⁾ 그런데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명군이 조선에 파병되어 장기간에 걸쳐 주둔함에 따라 은과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명과 조선의 군수체계는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명은 군인들에게 은을 봉급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은이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조선에서 明軍이 은을 갖고 양식을 구매할 수는 없었으리라 짐작된다.¹¹⁾ 그렇다면 명과 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 일본학자 山本進은 명이 본국에서 생산된 면포인 靑布와 藍布를 은으로 구입하여 조선에 가져와 군량으로 교환하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많은 양의 靑布와 藍布가 조선에 유입되었다고 지적한다.¹²⁾ 그간 명군에게 봉급으로 지급된 은이 조선에 유입되는 과정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³⁾ 이와 대조적으로 은과 함께 조선에 유입된 중국산 면포인 靑布와 藍布에 대해서는, 관건이기는 하나 山本進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專論일 정도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¹⁴⁾ 山本進의 연구는 임진전쟁 이후 靑布가 조선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규명한 선구적 업적이긴 하지만, 靑布·藍布의 개념 규정이 불철저할뿐더러 그 용도를 군용 면포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 8) 임진전쟁기 조선과 명간 군수 시스템의 차이와 이로부터 야기된 여러 문제에 관해서는 오호성, 『壬辰倭亂과 朝·明·日의 軍需시스템』, 경인문화사, 2013과 윤여석,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군사』 101, 2016이 선구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군수물품 중에서도 특히 무기와 그 재료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108, 1983 ; 米谷均, 「十七世紀前期日朝關係における武器輸出」, 藤田覺編, 『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2000 ; 허태구, 「17세기 조선의 염초무역과 화약제조법 발달」, 『한국사론』47, 2002 등을 참조.
- 9) Ray Huang, *Taxation and governmental finance in sixteenth-century Mi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pp.112-121. 한국어문헌으로는 김홍길, 「세역제도」,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pp.74-79가 간결한 개관을 제공한다.
- 10) 송재선, 「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 『변태섭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 11)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1992, p.5. 물론 이후 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조선에서도 은을 매개로 하는 교환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명군의 군수조달 문제는 은 경제가 자리를 잡기 이전인 참전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 12)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앞서 언급한 오호성과 윤여석의 경우 명의 군수 조달체계에서 은이 수행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어 중국산 면포의 조선 유입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지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오호성, 『壬辰倭亂과 朝·明·日의 軍需시스템』, 경인문화사, 2013 ; 윤여석,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군사』 101, 2016, pp.246-247.
- 13) 岡野昌子,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明清史論叢』, 燎原, 1977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오호성, 『壬辰倭亂과 朝·明·日의 軍需시스템』, 경인문화사, 2013 ; 윤여석,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군사』 101, 2016 ;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以白銀爲中心의 初步考察」, 『古代文明』 12-3, 2018 등 참조.
- 14) 임진전쟁기 靑布의 조선 유입에 관해서는 한명기가 선구적으로 언급하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pp.102-104. 한편 김순영은 조선후기의 靑布를 고찰한 연구에서 靑布에 대해서 주목한 바 있다. 김순영, 「조선후기 청포와 삼승의 개념 및 용도: 청포전의 판매 물종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0-5, 2016.

이에 본고에서는 임진전쟁기 明軍의 군수체계를 개괄하면서 중국산 면포가 여기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전장의 무력 충돌만이 아니라 후방의 군수 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한다는 군사학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靑布와 藍布라는 물품의 관점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종래의 연구사적 공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¹⁵⁾

II. 明軍의 임진전쟁 참전과 중국산 면포

靑布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世宗 때부터 각종 전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등장하고¹⁶⁾, 또 成宗 때에 明에서 온 사신이 圓覺寺에 예불하고서 “三升綿布”를 시주했다는 기록¹⁷⁾도 있어 외국에서 제조되는 희귀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靑布나 藍布의 등장 빈도가 조선측 사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기점이 바로 明軍의 임진전쟁 참전이다. 본장에서는 명군이 참전을 단행한 뒤 전황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살펴보고 중국산 면포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고찰하겠다.

명군의 군수체계는 기본적으로 明代의 兵制인 衛所 제도에 근간을 두었다.¹⁸⁾ 衛所란 明의 太祖 朱元璋에 의해 창설된 군사조직이다. 衛는 指揮使의 관할 하 5개의 千戶所(5,600명)로 이루어져 있고, 所는 10개의 百戶所(1,120명)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衛와 所의 연합체를 ‘衛所’라 통칭한다. 衛所는 지역에 따라 在外衛所와 在京衛所로 대별되는데, 전자가 北邊이나 沿海와 같이 방위상 요충지에 설치된 반면, 후자는 수도인 京師를 근거지로 두었다.¹⁹⁾ 衛所에 소속된 군사는 직접적인 군사 활동에 종사하는 戍軍(守城兵)과 위소의 경제적 기반인 屯田을 경영하는 屯軍(屯田兵)이 양대 축을 이루었다. 시기에 따라 변화했지만, 永樂 연간 戍軍과 屯軍의 비율은 대체로 3:7 정도였다.²⁰⁾

衛所는 이처럼 戍軍에 의한 군사 행위와 屯軍에 의한 경제 행위에 의해서 지탱되는 자급자족적 군사 단위였으나, 正統 연간에 발생한 土木堡의 變을 기점으로 명의 북변 방위·재정 조달 체제 자체가 일시에 경색을 맞이하였다. 증대하는 북변 방위비

15) 紀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西曆을 사용하되 初出에 한정하여 조선의 왕호와 명의 연호를 병기 - 예컨대 1592(宣祖 25·萬曆 20)년 - 했지만, 번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양력으로 환산하지는 않았다.

16) 『세종실록』권9, 세종 2(1420·永樂 18)년 9월 신사조 ; 『세종실록』 권17, 세종 4(1422)년 9월 경신조.

17) 『성종실록』권157, 성종 14(1483·成化 19)년 8월 갑자조.

18) 『明史』 권77, 食貨志, 「屯田」조 ; 『正德會典』 권19, 戶部4, 「屯田」조 참조. 아울러 明代의 軍屯에 관해서는 王毓銓, 『明代的軍屯』, 中華書局, 1965가 고전적 연구에 해당한다. 한국학계에서는 윤정분, 「明代 軍屯制 研究」, 『동방학지』 39, 1983을 참조. 이하 軍屯制에 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明史』·『正德會典』의 「屯田」조와 王毓銓·윤정분의 연구에 의거하여 서술하겠다.

19) 明代의 衛所制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川越泰博, 『明代中國の軍制と政治』, 東京: 國書刊行會, 2001 ; 于志嘉, 『明代軍戶世襲制度』, 臺北: 學生書局, 1987 등을 참조.

20) 明代 戍軍과 屯軍의 비율 추이는 王毓銓, 『明代的軍屯』, 45-49쪽 참조.

에 짝을 맞추어 衛所 軍官의 둔전 사유화와 이에 따른 屯軍의 이탈이 현저해지면서 명의 군사제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²¹⁾ 즉 종래의 둔전에 기반을 둔 兵農一致의 자급체제가 무너지면서 명 중기 이후에는 병사마다 봉록을 지급하는 募兵制가 확대된 것이다.²²⁾ 명 조정은 戶部의 太倉庫에서 복변 군사지대에 배치된 군사들에게 직접 은을 지급하는 京運年例銀을 운용하는 한편, 민간 상인들에게 兵餉을 지정된 지역까지 운송한 대가로 소금 거래를 허가하는 開中法을 실시하고 군사들이 은으로 이를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명 중기 이후의 군수체계 하에서 임진전쟁에 참전한 명군이 어떻게 군량을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592(萬曆 20)년 4월 부산진에 상륙한 일본군이 개전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 漢城까지 함락시키자 명과 접경한 義州까지 파천한 宣祖는 긴급히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명 조정은 宋應昌을 經略防海備倭軍務로 하는 지원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明軍은 조선군과 연합하여 이듬해인 1593(萬曆 21)년 1월에는 평양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의 분전으로 패배함으로써 明軍의 남하는 저지되어 전선은 교착 상태로 치닫게 된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환되면서 군수 보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은 布貨에 의한 현물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종래 은을 사용하여 군량과 마초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조달·보급하던 명군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宋應昌을 비롯한 명군 지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우선 전방에 주둔한 군대에 직접 군수물자를 보급하려 하였다. 명측이 본국에서 銀으로 군량과 마초를 구입하여 조선과의 국경까지 운송하면, 조선측이 이를 수령하여 각지의 明軍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²³⁾

그러나 明軍의 규모와 배치가 발목을 잡았다. 참전 초기 明軍은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최대 40,000명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1592(萬曆 20)년 12월 명군 지휘부의 宋應昌이 압록강 渡江을 앞두고 遼東에 집결시킨 군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步兵	馬兵	미도착 병	총수
薊州鎮	4350	3750	2900	11000
保定鎮	2500	2500	-	5000
遼東鎮	0	7000	-	7000

21) 屯田의 붕괴 과정에 관해서는 王毓銓, 『明代的軍屯』, 275-373쪽을 참조.

22) 明 中期 이후 본격화되는 募兵制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서인범이 土木堡의 變 직후 京師 방위를 위해 모집된 義勇과 民壯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 徐仁範, 「土木의 變と勤王兵 : 義勇と民壯を中心として」, 『東洋學報』 82-1, 2000.

23) 陳尙勝, 「壬辰禦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4, 2012 ; 윤여석,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군사』 101, 2016 참조.

	歩兵	馬兵	미도착 병	총수
大同鎮	0	5000	-	5000
宣府鎮	0	5000	-	5000
山西鎮	0	0	2000	2000
劉綎	0	0	5000	5000
楊應龍	0	0	5000	5000
標下 家丁	-	-	-	1316
총수	6850	23250	14900	46316

출전) 『經略復國要編』 「檄李提督」 萬曆 20(1592)년 12월 8일조

<표 1> 1592년 12월 明軍의 병력 상황

이에 따르면 도강 직전 明의 정규군 규모는 30,100명이고 여기에 미도착병 14,900명과 각 군관 휘하의 家丁 1,316명을 합하면 46,316명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군사가 전원 도강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임진전쟁 개전 초기에 있어서 명군이 조달해야 하는 규모는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4만명에 이르렀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명군이 주둔하는 지역도 전선에 따라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²⁴⁾ 이런 까닭에 명이 지속적으로 본국에서 군량과 마초를 조달·운송하여 조선 각지에 주둔한 明軍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군수물자의 수송을 둘러싼 문제는 明軍이 참전한 당초부터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1592(선조 25)년 12월 도강을 앞둔 명군이 처한 물자 수송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明軍의 糧餉에 대한 일은 오늘날 매우 급하고 절박합니다. 一路는 겨우 支用할 수가 있으나 만약 安定 등지에 군사가 여러 날 주둔하면 식량이 반드시 모자랄 것입니다. …… 강 건너에서 수송해 오는 쌀과 콩이 끊임없이 잇따라 거의 8만 석에 이른다고 하니 皇恩이 망극합니다. 義州로 들여오고자 하나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火器 등의 물건을 연 2일 동안 수송하는데, 혹은 관에서 은냥을 지급하여 소를 사서 보내기도 하였지만 중로에서 막혀 하룻길을 이들이 걸러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니 명의 장관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곳에 비록 백만 석이 있다 해도 그 형세가 쉽게 들여올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龍川·定州의 사정을 잘 아는 뱃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 역시 얼어붙어 漕運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쌀을 수송하는 절차가 모두 은을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비록 은냥이 있더라도 가져다 쓸 사람이 없으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은으로 三升布와 신발[兀刺] 등의 물건을 湯站 등지에서 市價에 따라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때에 맞춰 조치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²⁵⁾

24) 岡野昌子,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明清史論叢』, 燎原, 1977, pp.143-144.

25) 『선조실록』 권33, 선조 25(1592)년 12월 22일 술신조: 備邊司啓曰. 天兵糧餉之事, 在今日極爲急切. 一路則庶可支用, 而若屯兵安定等地, 曠日持久, 必有匱乏之患. …… 自越邊輸送米豆, 絡繹不絕, 幾至八萬石云, 皇恩罔極. 而欲爲輸入義州, 民力已竭. 如火器等物, 連二日輸轉, 或官給銀兩, 買牛以送, 中路留滯, 一日之程, 二日尙未得達, 天朝將官見之, 謂之何哉. 此處, 雖有百萬, 其勢未易輸入. 頃者招問龍川·定州事知行船人, 則亦以冰凍, 不合漕運云, 尤無奈何. 聞中原輸米節次, 皆給銀而爲之, 此處雖有銀兩,

명군은 이미 약 8만석에 이르는 군량을 수송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를 조선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義州의 민력이 고갈된 데다가 추위로 龍川·定州 일대도 얼어붙어 漕運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명에서는 군량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국경까지 운송하는 인력에게도 은을 지불하였던 반면, 조선에서는 은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송 인력에게 은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明軍의 군수를 책임지고 있던 遼東都司 張三畏는 “내 생각에는 靑布·신발[兀刺] 등의 물건을 많이 준비하여 와서 市價에 따라 安州·定州 근처에서 곡식을 무역하고자 한다”고 하여 명측에서 직접 靑布를 준비해 와서 조선 내에서 곡식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²⁶⁾ 위의 사료는 이러한 張三畏의 제안에 대해 조선측에서 논의한 정황을 전하고 있다.²⁷⁾ 즉 綿布가 현물화폐로 통용되던 조선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명군이 중국산 綿布인 靑布=三升布를 가져다가 직접 교역하여 군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끝에 宋應昌을 비롯한 명군 지휘부는 은으로 靑布를 비롯한 물자를 사와서 조선에서 다시 쌀, 콩, 말먹이와 맞바꾸도록 지시하였다.²⁸⁾ 명군의 매입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靑布 2,681필, 藍布 9,022필, 絨帽 1,500정, 羊毛帽 1,500정 등이 조선에 수송되었다.²⁹⁾ 당시 명군의 구매 보고에 따르면, 1필당 가격은 靑布가 은 3전 5푼, 藍布가 은 2전 2푼이었고, 絨帽는 1정당 은 8푼, 羊毛帽는 1정당 은 4푼 5리였다.³⁰⁾ 따라서 명군은 구매비용으로 각각 靑布에 938냥 3전 5푼, 藍布에 1,984냥 8전 4푼, 絨帽에 120냥, 羊毛帽에 67냥 5푼, 합하여 총 은 3,110냥 6전 9푼을 지불하였다.

그렇다면 明軍이 가져 온 靑布는 어디에서 생산된 면포였을까. 明末의 宋應星이 저술한 『天工開物』에는 靑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어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靑布는 애초 蕪湖에서 만들어져 긴 세월 유행하였다. 청색즙으로 문질러서 청색 빛깔을 내는 방법으로 만든 것인데, 변방과 외국에서 모두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정이란 것이 오래되면 싫증이 나기 마련이라 毛靑이 근래에 출현하였다. 松江府에서 나는 좋은 면포를 짠 청색으로 염색하여 만들어 청색즙으로 문질러지 않고 바람으로 말려 豆漿水를 섞은 膠水에 한 차례 걸러낸다. 미리 標

更無取用之人, 其不可成必矣. 莫若以銀, 買三升及兀刺等物於湯站等地, 從市直許買, 及時措置, 以補不足.

26) 『선조실록』 권33, 선조 25(1592)년 12월 22일 술신조: 我意欲多備靑布·兀刺等物, 從市價買穀於安定近處’

27) 동일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명측 張三畏의 발언 중에는 교역품이 “靑布”로 나오고 조선측 비변사의 장계에는 “三升布”로 표기되어 있어 양자가 동일한 물품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事大文軌』 권3, 「張都司解送布帽貿換糧草」(萬曆 21년 정월 16일).

29) 『事大文軌』 권3, 「戶部查問買辦軍餉支放見在數目」(萬曆 21년 2월 28일).

30) 『事大文軌』 권3, 「張都司發送布帽換貿糧料」(萬曆 21년 정월 27일).

礪이라는 좋은 靑黛를 비축해 두고 거기에 넣어 얇게 염색한 뒤에 바로 꺼내면 붉게 타오르는 색이 은은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면포가 별안간에 유행하게 된 것이다.³¹⁾

이에 따르면, 靑布란 安徽省 蕪湖 일대에서 주로 제작되던 청색 면포를 가리키는 데, 중국본토에서만이 아니라 변방이나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물품이었다. 당시 면포의 제조와 염색기술은 각각 松江과 蕪湖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³²⁾ 특히 萬曆 연간에 蕪湖의 靑布를 징수하기도 하였는데,³³⁾ 임진전쟁 당시에 明軍이 운송해 온 靑布 역시 蕪湖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⁴⁾

주의할 점은 靑布가 각광을 받은 것은 단순히 색상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중국산 靑布는 무명에 양모를 함께 섞어 실을 뽑아다가 布로 짠 제품이었다.³⁵⁾ 무명보다 두꺼운 양모가 교직되어 있던 까닭에 촘촘하게 엮을 수 없어 올의 밀도는 三升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麤布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면포는 아니었다. 밀도는 다소 성기더라도 올 하나하나가 두꺼워 내구성과 방한성은 뛰어났기 때문이다.³⁶⁾ 조선에서 靑布를 가리켜 絨布의 속명³⁷⁾이라 하거나 毛布라고 통칭³⁸⁾한 것도 면직물과 모직물을 합성한 이러한 재질상의 특징에 기인했으리라 생각된다.

명 조정에서는 방한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靑布의 특징을 살려 갑주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사료상에서 '靑布鐵甲'이나 '靑布響甲'으로 등장하는데, 면포와 가죽으로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철갑을 누빈 뒤에 못으로 고정시킨 형태의 갑주로 布綿甲으로도 통칭된다.³⁹⁾ 명 중기 이후 전쟁에서 火器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布綿甲은 火器의 피해를 경감하는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였다고 한다.⁴⁰⁾ 靑布로 제작된 갑주는 兵部에서 수량을 관리하는 품목이었다.⁴¹⁾ 뿐만 아니라 각지의 衛所에서도 제

31) 『天工開物』 卷上, 「附染毛靑布色法」: 靑布初尚蕪湖千百年矣, 以其漿礪成靑光, 邊方外國皆貴重之. 人情久則生厭, 毛靑乃出近代, 其法取淞江美布染成深靑, 不復漿礪, 吹乾, 用膠水參豆漿水一過. 先蓄好靑, 名曰標礪, 入內薄染即起, 紅焰之色隱然, 此布一時重用. 덧붙여 毛靑으로 염색한 면포는 이후 毛靑布로 불리며 明末清初에는 靑布를 대신할 정도로 유행하게 된다. 靑布를 의미하는 만주어 mocin이 바로 이 毛靑에서 유래한 것이다. 清代의 毛靑布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32) 『天工開物』 卷上, 「布衣」: 凡棉布寸土皆有, 而織造尚松江, 漿染尚蕪湖.

33) 『神宗實錄』 卷138, 萬曆 11(1583)년 6월 癸丑조.

34) 명 중기 이후 장강 델타 지역에서 생산된 면포는 江南 지방을 집하거점으로 하여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 거래되던 고급상품이었다. 山本進, 『清代의市場構造と經濟政策』,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제1장 참조. 따라서 安徽 일대에서 제조된 靑布는 이러한 전국 시장망을 경유하여 수도권 일대로 유통되었으리라 생각된다.

35) 이와 관련하여 山本進은 靑布가 三升으로 되어 있어 올수는 상대적으로 헐겁지만, 두꺼운 綿絲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제작했기 때문에 상품 가치는 상당했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pp.36-37.

36) 『燕巖集』 권40, 別集 熱河日記, 「深衣」: 中國三升布, 雜羊毛於綿, 而同織爲布者也. 한편 김순영은 재질상의 유사성에서 靑布=三升布와 松江에서 제조된 면직물 간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순영, 「조선후기 청포와 삼승의 개념 및 용도: 청포전의 판매 물종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0-5, 2016, pp.85-86.

37) 『肅宗實錄』 권40, 肅宗 30(1704)년 12월 갑오조.

38) 『靑莊館全書』 권57, 「蟲葉記 四」.

39) 『正德大明會典』 권156, 工部10, 「軍器軍裝」; 『續文獻通考』 卷166, 兵考, 「軍機」등 참조.

40) 劉永華, 『中國古代軍戎服飾』, 上海古籍出版社, 2003, pp.173-176 참조.

41) 『正德大明會典』 권123, 兵部18, 「武庫清吏司」참조.

작하여 보관하는 수량이 정해져 있었다.⁴²⁾ 요컨대 임진전쟁을 전후한 시기 명에서는 靑布가 布綿甲과 같은 갑주를 제작하는 군수물자로서 활용되던 물품이었다.

明軍이 조선에서 군량을 수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靑布와 藍布를 활용한 배경에는 아마도 위와 같은 물품으로서의 매력의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蕪湖에서 주로 생산되던 靑布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평가를 얻고 있었다. 명조는 용경 화의 이후 몽골과의 互市에서 靑布를 지급하고 몽골의 말을 구입해 오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靑布가 유목민에게도 높은 상품가치를 지닌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면포가 현물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던 조선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靑布 그 자체는 갑주를 제작하는 재료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던 품목이었으므로 다른 물품보다 조달이나 운송에 용이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明軍은 본국에서 가져 온 靑布와 藍布를 군량 수급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필요한 일용품의 조달하는 데에도 靑布와 藍布는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張三畏는 은 200냥과 靑布·藍布를 가지고 해변으로 가서 소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⁴⁴⁾ 明軍이 말 값으로 靑布를 지불하였다는 기록도 빈출하고 있다.⁴⁵⁾ 靑布와 藍布는 명군이 현지에서 군량을 비롯한 각종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용도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靑布와 藍布는 명군이 군량을 운송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宋應昌은 萬曆 21(1593)년 3월에 병부상서 石星에게 보낸 서신에서, 明軍은 京師에서 靑布·紅布·藍布 10여만필을 구매해다가 수레를 끄는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 전용했는데, 이는 당시 인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라고 보고하고 있다.⁴⁶⁾ 즉 靑布와 藍布는 인부를 고용한 값으로 지불되어 군량의 수송 자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진전쟁 당시 靑布와 藍布는 명과 조선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물품으로서 서로 다른 군수 시스템에 기반을 둔 양국의 군사 운용을 원활하게 묶어주는 유희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42) 가령 山西省의 국경지대인 雁門關·寧武關·偏頭關 산하 7개 衛所의 “歲造軍器”에는 ‘靑布鐵甲’이 항목으로 설정되어 매년 220개를 제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廖希顏, 『三關志』, 「武備考」 참조.

43) 『三雲籌俎考』 卷2: 每年互市額馬一萬四千五百匹, 其款有八曰梭布, 馬每匹梭布四十疋, 有靑布者, 有無靑布者, 共二等.; 『全邊略記』 卷2: (萬曆)二年,時俺答既封吉能, 亦修貢受約束, 因貢爲市. 中國以梭布皮物易虜馬, 虜亦利漢財物, 交易不絕, 胡越一家.

44) 『선조실록』 권36, 선조 26(1593·萬曆 21년 3월 23일 술인조.

45) 『선조실록』 권60, 선조 28(1595·萬曆 23년 2월 22일 을축조.; 『선조실록』 권75, 선조 29(1596·萬曆 24년 5월 15일 신사조.

46) 『經略復國要編』, 「報石司馬書」 萬曆 21(1593)년 3월 2일조: 朝鮮民間止用粟帛, 不用銀兩, 京中買靑紅藍布十餘萬匹, 轉僱車腳解賞, 以便使用, 此實將士之所深樂者. 다만 홍색의 경우 조선에서는 황제의 색이라 하여 사용을 꺼렸기 때문에 실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靑布와 藍布였으리라 생각된다.

Ⅲ. 조선으로 유입된 중국산 면포의 용도

명군이 靑布와 藍布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군수 물자를 구매한 대가로 지불함에 따라 조선측의 유통량과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났으리라 짐작된다.⁴⁷⁾ 명군의 張三畏는 상관인 宋應昌에게 “朝鮮國의 風俗은 銀兩을 사용하지 않고 상거래에 힘쓰지도 않아 상가도 별로 없다. 布匹을 범용하여 쌀, 콩, 풀단과 거래할 뿐”이라며 조선인이 “좋아하는 물품은 靑·藍布匹, 絹帛, 綿花로 만든 신발[兀喇]과 같은 것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⁴⁸⁾ 이로부터 명군 지휘부가 은을 사용하지 않는 조선에서도 중국산 면포가 특히 높은 수요를 지닌 물품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은을 대체할 수단으로 靑布·藍布를 구비해 왔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靑布와 藍布는 조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을까. 아래에서는 이를 용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상 수단

전시재정하의 조선정부에서 靑布·藍布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포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1594(선조 27)년 비변사는 화약의 원료인 염초 굽기를 원하는 투항 일본군을 대상으로 “마땅히 은혜와 의리로 그들의 마음을 결속시켜야 하니, 순서에 따라 靑布와 藍布를 지급하고 만일 만든 염초가 품질이 좋으면 司猛의 告身을 주어 친부하는 마음을 권장하자”⁴⁹⁾고 진언하였고, 동년에 류성룡 역시 “투항한 倭人에게 이미 空名告身과 靑布를 내렸습니다”⁵⁰⁾고 보고하는데, 이로부터 靑布와 藍布가 투항한 일본군에 대한 포상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靑布와 藍布의 포상은 조선군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1593(선조 26)년 12월 훈련도감은 火炮軍 가운데 세 번 맞춘 자에게 綿布와 靑布를 상주거나, 이듬해인 1594(선조 27)년 7월에는 片箭·鐵箭·騎射·鳥銃과 같은 과목에 자원한 이를 시험하여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5인에게 靑布와 綿布·弓箭을 시상한 사례⁵¹⁾에서 전시하 군사 훈련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靑布의 포상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靑布의 포상은 새로 도입된 무기인 火器의 숙련도만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를 높이

47) 임진전쟁 시기 조선에 유입된 靑布·藍布의 수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사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전쟁의 거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되는 1598년에 명이 “靑布 3만 7백 59필과 藍布 5만 1천 7백 67필”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1598·萬曆 26)년 10월 을해조. 정황상 7년간에 걸쳐 明軍이 靑布와 藍布를 꾸준히 조선에 가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전체 유입량은 결코 적지 않은 수량일 것으로 짐작된다.

48) 『經略復國要編』, 「檄艾主事」 萬曆 21(1593)년 정월 5일조: 據原委收糧都司張三畏稟稱. 朝鮮國風俗, 不行使銀兩, 不務貿易, 並無街市, 凡用布匹, 以米荳草束相易, 所喜者靑藍布匹, 絹帛, 綿花兀喇之類.

49) 『선조실록』 권49, 선조 27(1594·萬曆 22)년 3월 21일 기해조: 如此投順之倭, 當以恩義結其心, 題給衣次靑藍布. 若所煮焰硝品好, 則授司猛告身, 以勸親附之心.

50) 『선조실록』 권50, 선조 27(1594·萬曆 22)년 4월 17일 을축조: 成龍曰. 降倭處, 空名告身及靑布, 已下送矣.

51) 『선조실록』 권46, 선조 26(1593·萬曆 21)년 12월 13일 임술조 ; 『선조실록』 권53, 선조 27(1594·萬曆 22)년 7월 5일 신사조.

는 데에도 기여했다. 1594(선조 27)년 1월 비변사는 宣居怡·洪季男·鄭希玄을 비롯하여 남부지역에서 활약한 將士들에게 靑布와 藍布를 2필씩 사여하자고 주청하였는데, 그 효과로 “공로를 포상하고 軍心을 격려하자”고 지적하고 있다.⁵²⁾ 동일한 논리로 북방에 대해서도 靑布의 사여가 이루어졌다. 1596(선조 29)년 3월 盧稷은 북방의 藩胡로 구성된 土兵에게 평시에는 봉록과 군복을 지급하였었는데,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모두 주지 못하게 되었으니 武才를 시험하여 靑布를 포상하면 국은에 감격할 것이라며 주청하고 있다.⁵³⁾

(2) 화폐 용도

조선정부가 군인에 대한 포상품으로 靑布나 藍布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군인들은 지급받은 靑布나 藍布를 어떻게 활용했던 것일까. 山本進은 이에 대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삼남지방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靑布와 藍布가 식량을 교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하는데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1593(선조 26)년 비변사가 남방으로 출정한 將士들에게 포상할 품목을 논의하는 기사가 주목된다. 애초 선조는 포상품으로 이들에게 은을 하사했었는데, 비변사는 이에 대해 은이 아니라 靑布나 藍布를 하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은냥은 國用에 관계될 뿐 군사가 입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이며, 영남에는 흉년이 들어 아무리 은냥이 있다 해도 곡식을 살 수가 없으니, 은 대신 靑布와 藍布 1천 5백 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⁵⁾

즉 흉년이 들어 은으로 양식을 교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은 대신에 靑布와 藍布를 내리자는 요지이다. 임진전쟁 시기 조선에서는 명군이 주둔한 곳마다 민중들이 몰려들어 靑布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곤 하였다.⁵⁶⁾ 즉 본 사료의 진술을 통하여 靑布를 통화로 하는 시장 속에 明軍만이 아니라 조선군 역시 편입되어 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선정부가 관료의 급료로 靑布를 지급한 사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594(선조 27)년 호조는 그동안 관료의 급료로 지급하던 말먹이 콩이 부족해서 皮穀으로 대신하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을 드러냈으니 靑布와 藍布로 액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청하였다.⁵⁷⁾ 靑布의 화폐화 현상이 군대만이 아니라 관료층에도 확산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일례라 할만하다.⁵⁸⁾

52) 『선조실록』 권47, 선조 27(1594·萬曆 22)년 1월 21일 경자조: 付送靑藍三升布各二匹, 一以褒獎苦戰之功, 以警動軍心何如.

53) 『선조실록』 권73, 선조 29(1596·萬曆 24)년 3월 25일 임진조.

54)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p.42.

55) 『선조실록』 권40, 선조 26(1593·萬曆 21)년 7월 1일 계축조: 但銀兩有關於國用, 而軍士不可衣食. 且嶺南饑荒, 雖有銀兩, 亦不得售. 靑·藍布一千五百匹, 給送何如.

56) 『선조실록』 권97, 선조 31(1598·萬曆 26)년 2월 8일 계해조.

57) 『선조실록』 권53, 선조 27(1594·萬曆 22)년 7월 8일 갑신조.

(3) 방한용 의복

임진전쟁기 조선에서 靑布와 藍布가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처럼 통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靑布와 藍布 모두 본래의 용도는 의복을 제작하는 옷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두 물품이 옷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山本進은 靑布와 藍布는 어디까지나 군용물자여서 서민의 의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⁵⁹⁾ 확실히 靑布와 藍布가 서민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옷감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하다. 그러나 靑布와 藍布 자체가 일반 서민이 아닌 관료층이나 군인층을 주대상으로 사여되고 있었으므로 관료층과 군인층의 경우 사용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尹國馨(1543~1611)의 저술인 『甲辰漫錄』에는 “임진년 난리 이후로 中原의 物貨도 점차 나오게 되어 靑三升을 사다가 만든 철릭을 上品服이라 하였다”⁶⁰⁾는 구절을 주목할만 하다. 이는 임진전쟁 이후 중국제 옷감인 靑三升으로 철릭을 만들어 입었던 사회 풍조를 언급하고 있어 즉 관원층에서는 靑布와 藍布가 의복용 옷감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⁶¹⁾ 그렇다면 이들 중국산 면포가 옷감으로서 가진 특징은 무엇이였을까.

柳成龍이 아뢰기를, “신이 鄭希賢을 보니 몸에 겹옷만을 입었습니다. 이제 出使하면 얼어 죽을까 염려되니, 위에서 하교하여 靑布와 물건을 내어 주어 옷을 만들어 내리게 하시면 추위를 막는 물자를 장만할 수 있고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느낄 것입니다. 그의 공이 많은 만큼 충분히 권려하여 뒷날의 공효를 당부하는 것이 어땀하겠습니까”⁶²⁾

柳成龍은 여기에서 靑布로 옷을 만들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방한용 옷감으로서 靑布가 쓰였던 사례는 이외에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특히 山本進은 靑布와 藍布가 서민의 의복용 옷감이 아니라고 단언했지만, 실제 사료에서는 선조가 “花絨과 靑布는 판매할 수 없겠는가. 계절이 추울 때가 되어 백성들이 추위를 막기에 절실하므로 쉽게 무역이 될 것 같다”⁶³⁾고 한 데 대하여 호조는 “靑布나 花絨은 바로 추위를 막는 물건이니 시가에 따라 대등하게 무역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있겠”⁶⁴⁾다고 답하고 있어

58) 동일한 시기 公州에 머무르고 있던 왕세자 光海君은 牧使와 判官에게 靑布를 하사하여 위로한 바 있다. 『조선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계해조. 다만 여기에서는 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당시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들 역시 하사받은 靑布를 화폐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9)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p.42-43.

60) 『甲辰漫錄』, 「尹判書國馨撰」: 壬辰亂後 而中原物貨亦漸出來, 貿靑三升作帖裡者, 謂之上品服.

61) 한명기는 靑布·藍布의 유입을 임진전쟁 이후 사치풍조가 유행하는 징조로 파악하고 있다.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pp.103-104.

62) 『선조실록』 권82, 선조 29(1596·萬曆 24)년 11월 7일 기해조: 成龍曰.且臣見鄭希賢, 身上只着二袂衣. 今若出使, 則凍殺可慮. 自上下教, 出給靑布與某物, 作衣以賜, 則可辦禦寒之資, 仍懷挾纊之感, 渠功則多矣. 十分勸勵, 以責後效, 何如.

63) 『선조실록』 권93, 선조 30(1597·萬曆 25)년 10월 11일 술진조: 上仍謂都承旨尹覃茂曰. 花絨·靑布, 猶不可販賣耶? 節迫凍沍, 民必切於禦寒, 似易貿遷. 極力販賣, 以備糧餉事, 速問于該曹.

64) 『선조실록』 권93, 선조 30(1597·萬曆 25)년 10월 13일 경오조: 靑布·花絨, 乃是禦寒之資, 若從市

靑布·藍布가 국왕과 호조 양측 모두에서 백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한용 옷감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갑주

靑布와 藍布가 방한용 의복의 옷감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명조에서처럼 갑주를 제작하는 재료로도 활용되었을까. 선행연구에서는 임진전쟁기에 이미 靑布와 藍布가 군수품으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임진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입된 靑布와 藍布가 즉각적으로 갑주를 제작하는 군수품으로 전용되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山本進의 경우 근거로 제시하는 사료는 한결같이 앞서 살펴봤던 포상과 관련된 것들인데, 군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라 해서 군수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⁶⁶⁾ 보다 신중한 태도로 관련 사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靑布와 藍布를 갑주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임진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598(선조 31)년 1월 선조와 遊擊 陳寅의 접견에서 찾을 수 있다.

遊擊 陳寅이 말하기를, "종이를 얻어 衲衣를 만들어 우리 군사들에게 주어 전장에서 쓰고자 합니다. 휴지를 막론하고 八道에 널리 구하여 쓰기에 넉넉하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 "종이로 옷을 만들면 총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매우 좋습니다"하고 이어서 종이로 만든 갑옷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크건 작건 탄환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에 적셔서 입으면 탄환을 막는 데 더욱 신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종이를 두텁게 깔고 三升布를 안팎에 붙이고 종이로 만든 노끈을 둥글게 맏어서 개암 열매 정도의 크기나 밤 크기로 만들어 뽁뽁하게 서로 붙게 하여 노끈으로 꿰어서 옷 안에 매달면 되는 것입니다. 雪綿子를 종이 사이에 깔면 더욱 신묘합니다."하였다.⁶⁷⁾

본 사료의 핵심내용은 三升布, 즉 靑布와 종이를 엮어서 제작한 갑옷이 총탄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火器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탁월했던 布綿甲이 명조에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와 동일하다.⁶⁸⁾ 다만 이와 같은 陳寅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임진전쟁 시기에 靑布를 사용한 갑주 제작을 실행했다는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靑布로 된 갑주 제작이 실제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불명이나, 1661(현종 2)년 柳赫然의 "일찍이 선대에는 三升布로써 군복을 만들었다"⁶⁹⁾는 언급을 통하여 대략 17

直, 平反交易, 民必不厭, 隨處可換.

65)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p.40 ; 김순영, 「조선후기 청포와 삼승의 개념 및 용도: 청포전의 판매 물종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0-5, 2016, p.87.

66) 가령 山本進이 근거로 제시하는 『선조실록』 권36, 선조 26년 3월 계유조는 조선측이 명군의 군복을 제작하는 데 靑布와 藍布를 사용했다는 기록이므로 조선군의 군복과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김순영의 경우 靑布가 임진전쟁 시기에 군복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근거 사료는 전쟁이 끝난 이후인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1601)년 1월 경술조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67) 『선조실록』 권96, 선조 31(1598·萬曆 26)년 1월 20일 병오조: 遊擊曰. 欲得紙卷以爲衲衣, 以給吾軍, 用於戰場. 勿論休紙, 廣求八道, 以足於用. 上曰. 以紙作衣, 可以禦丸乎? 遊擊曰. 甚好矣. 因出示曾造紙甲曰. 依此樣造着, 則大小丸皆不得入矣. 濡水而衣, 則禦丸尤妙矣. 作衣之法, 先以紙厚鋪, 以三升布, 着內外, 以紙繩盤結, 如榛子大, 或如栗子大, 簇簇相襯而穿之以繩末, 結之於衣內. 若以雪綿子, 間紙鋪之, 則尤妙矣.

68) 劉永華, 『中國古代軍戎服飾』, 上海古籍出版社, 2003, p.174 참조.

세기 초반이 아닐까 추정된다. 1682(숙종 8)년에 “禁軍의 철갑옷은 孝宗 때에 만든 것으로 지금 30년이 넘어 몹시 해졌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靑布로 된 갑주 제작과 관련된 사료 대부분은 17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⁷⁰⁾ 이를 감안한다면, 조선에서 靑布로 군복을 제작한 것은 최소한 임진전쟁 이후라고 생각된다. 실제 靑布와 藍布로 軍服을 제작했다는 사료는 임진전쟁이 끝난 뒤인 1601(선조 34)년 東萊 군사 3백 명의 軍服을 마련하기 위해 藍布 2백 필과 靑布 2백 필을 내려 보낸 것이 최초이다.⁷¹⁾

山本進은 일관되게 靑布와 藍布가 군용 면포로서 수요를 갖고 있었다 주장하지만, 적어도 임진전쟁기에 조선측에서 靑布나 藍布로 군복을 만들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히려 방한용 옷감으로서 활용한 사례가 훨씬 더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어 山本進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요컨대 조선은 靑布와 藍布가 임진전쟁을 계기로 유입된 당초부터 군용 면포로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은의 대용이나 방한용 옷감으로 사용하다가 군용 면포로서의 가치를 점차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임진전쟁 시기 명군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靑布와 藍布는 사료상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명칭이 가진 특징을 유형별로 고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靑布·藍布는 綿布와 구별되는데, 후자는 염색하지 않은 綿布인 白布로 추정된다, (2) 사료에 등장하는 ‘靑藍布’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靑布’와 ‘藍布’를 한 데 묶어 표기한 한문식 어법에 지나지 않는다, (3) 靑布와 藍布는 중국산 고급 면포를 가리키는 반면, 靑木綿과 藍木綿은 국내산 면포를 가리킨다, (4) 靑布와 藍布는 포를 짜는 단위인 升을 따서 三升布로도 통칭되었으나 예외가 존재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靑布와 藍布가 조선에 유입된 직접적 계기는 명군의 식량 수송 문제와 직결된다. 銀을 사용하지 않는 조선의 경제 체계로 인해 명군은 銀을 사용해서 군량이나 말먹이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明軍의 군수를 책임지고 있던 遼東都司 張三畏는 靑布를 준비해 와서 조선 내에서 곡식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조선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대량의 靑布·藍布가 조선에 운송되었다. 安徽省 蕪湖 일대에서 생산되던 靑布는 布綿甲을 제작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

69) 『승정원일기』 166책, 현종 2(1661·順治 18)년 1월 11일 신유조: 柳赫然曰, 曾在先朝, 軍服以三升布爲之事, 既有傳教, 而今則皆着錦衣, 此亦不當矣.

70) 『인조실록』 권50, 인조 27(1649·順治 6)년 3월 20일 기묘조: 『비변사등록』 숙종 8(1682)년 1월 28일조 ; 『비변사등록』 영조 35(1759)년 2월 10일조 ; 『승정원일기』 1418책, 정조 2(1778)년 4월 25일 을묘조 참조.

71)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1601·萬曆 29)년 1월 경술조.

었는데, 명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면포가 높은 교환가치를 가졌던 조선사회에서 靑布와 藍布는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데 매우 적합한 물품이었다.

靑布와 藍布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집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조선에서 靑布와 藍布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1) 포상 수단, (2) 화폐 용도, (3) 방한용 의복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무엇보다도 明軍이 주둔하는 동안 은과 더불어 靑布의 화폐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明만이 아니라 조선 역시 편입되고 있었던 점은 특기할만하다. 반면 靑布와 藍布가 당초부터 군용 면포의 용도로 중시되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임진전쟁 시기에 靑布·藍布를 갑주를 제작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았다. 靑布·藍布로 제작한 갑주의 기능과 효과는 임진전쟁 말기에 명을 통하여 전해졌지만, 그 상용화는 종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한편 임진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明軍은 저간의 전략을 수정하여 이번에는 靑布와 藍布를 조선에 강매함으로써 銀을 징수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⁷²⁾ 명은 임진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파병군의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막대한 양의 은을 투입하였는데,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자 철군에 앞서 그간 지출했던 은을 회수하려 했던 것이다.⁷³⁾ 이렇게 하여 임진전쟁이 종지부를 찍고 明軍이 철수한 뒤에도 靑布와 藍布는 조선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後金이 대두하여 명과 대립관계에 들어서자 조선은 後金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부상하였다. 1628(인조 6)년 後金은 丁卯胡亂의 피로인 贖還을 구실로 中江開市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종지와 후추 그리고 靑布를 비롯한 중국산 물자를 수급하였다.⁷⁴⁾ 당시 후금으로 인해 명과 육상 교통이 단절되어 있던 조선이 중국산 물자를 입수하는 방법은 椴島(=皮島)에 주둔하고 있던 毛文龍이나 후금의 공세를 피하여 遼東을 떠나 조선에 들어온 遼民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는데, 靑布 역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조선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後金과 조선간의 中江開市와 毛文龍과 遼民이 매개하던 명·조선 무역은 이와 같이 靑布와 藍布라는 물품에 의해서 서로 연동되어 있었다.⁷⁵⁾ 임진전쟁을 계기로 조

72)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병신조 ;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기미조 ;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을해조 참조.

73) 명이 임진전쟁 기간 동안에 지출한 은의 총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설이 분분하다. 1600(萬曆 28)년 工科給事中 王德完의 회계 보고에 의거한 780만냥설이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하여 최근 중국학자 萬明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최대 2,000만냥에 이르는 추정액을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以白銀爲中心의初步考察」, 『古代文明』 12-3, 2018, p.107. 다만 서인범이 지적하듯이 만력 초기 戶部 太倉庫의 세입액이 연평균 400만냥 전후였고 세출액과 대비하여 줄곧 연간 100만냥 정도의 적자가 지속되던 '재정 위기' 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萬明의 2,000만냥설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인범, 「明 萬曆年間の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 230, 2016, pp167-168.

74) 寺内威太郎, 「義州中江開市について」, 『駿台史學』 66, 1986.

75) 한편 후금과 명 사이의 무역 역시 椴島 세력을 매개로 하여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가령 毛文龍 사후 椴島를 점거한 劉興治가 1631년에 後金과 거래한 품목에 毛靑布와 藍布가 있었는데, 1필

선에 유입된 靑布와 藍布가 이제는 조선·명조·후금간 삼각무역의 핵심을 이루는 국제상품으로 변화한 것이다. 靑布·藍布는 임진전쟁과 그 후의 역사 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향후 靑布·藍布에 초점을 맞춰 유입된 규모와 가격, 수송 체계와 경로, 은과의 비교를 비롯한 주제들이 규명됨으로써 임진전쟁을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 0.6냥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淸初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明清史研究』 55, 2021, pp.94-95.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DB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DB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DB

『만기요람』 고전종합DB

『白沙集』 고전종합DB

『甲辰漫錄』 고전종합DB

『北關紀事』 고전종합DB

『燕巖集』 고전종합DB

『神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太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經略復國要編』 중국기본고적고DB

『天工開物』 중국기본고적고DB

『正德大明會典』 중국기본고적고DB

『續文獻通考』 중국기본고적고DB

『三雲籌俎考』 중국기본고적고DB

『全邊略記』 중국기본고적고DB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동향 - 戰功의 위기와 講和交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김병모, 「조선시대 교(膠)의 명칭 분화와 제조·생산된 교의 종류」, 『동방학』 45, 2021.

김병모, 「국가 수취 대상으로서 조선시대 膠의 분류」, 『동아시아고대학』 64, 2021.

김순영, 「조선후기 청포와 삼승의 개념 및 용도: 청포전의 판매 물종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0-5, 2016.

김홍길, 「세역제도」,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남미혜, 「조선전기 면업정책과 면포의 생산」, 『국사관논총』 80, 1998.

박기수, 「수공업」,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박평식, 「朝鮮初期의 貨幣政策과 布貨流通」, 『동방학지』 158, 2012.

박평식, 「朝鮮前期의 羈布流通과 貨幣經濟」, 『역사학보』 234, 2017.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豊] 외,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서인범, 「明 萬曆年間の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 230, 2016.

송재선, 「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 『변태섭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 스가와 히데노리(須川英徳), 「동아시아 해역 국제경제 질서와 임진왜란」, 이성무 외 엮음,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 오호성, 『壬辰倭亂과 朝·明·日의 軍需시스템』, 경인문화사, 2013.
- 윤여석,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군사』 101, 2016.
- 이장희, 「壬亂中 糧餉 考」, 『金學燁教授 華甲紀念論叢』, 1971.
-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淸初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명청사연구』 55, 2021
- 장학근,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論議」, 『임난수군활동논총』, 1993.
- 차혜원, 「중국인의 '南倭' 체험과 壬辰전쟁(1592-1598) - 『籌海圖編-重編』을 중심으로 -」, 『역사학보』 221, 2014.
-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1992..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한명기, 「'난동', '정발', '원조'를 넘어: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2008.
- 허태규, 「17세기 조선의 염초무역과 화약제조법 발달」, 『한국사론』47, 2002.
-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以白銀爲中心的初步考察」, 『古代文明』 12-3, 2018.
- 劉永華, 『中國古代軍戎服飾』, 上海古籍出版社, 2003.
- 張洋洋, 「丁酉戰爭時期邢玠關於明軍糧餉問題的措施研究: 以『經略御倭奏議』爲中心」, 『渤海大學學報』 6, 2019.
- 陳尙勝, 「壬辰禦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4, 2012.
- 洪性鳩, 「丁酉再亂時期明朝的糧餉海運」, 『新亞學報』, 2017.
- 岡野昌子,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明清史論叢』, 燎原, 1977.
-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108, 1983.
- 米谷均, 「十七世紀前期日朝關係における武器輸出」, 藤田覺編, 『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2000.
- 寺内威太郎, 「義州中江開市について」, 『駿台史學』 66, 1986.
- 山本進, 『清代の市場構造と經濟政策』,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 川西裕也, 「「文祿慶長の役」呼稱の再検討」, 『韓國朝鮮文化研究』 21, 2022.
- 天野元之助, 『中國農業史研究(増補版)』, 御茶の水書房, 1989.
-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織物業の發達」, 『清代東アジア史研究』, 日本學術振興會, 1972.
- Hitoshi, Nakano, "Research Trends in Japan o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Imji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2, 2013.
- Namlin, Hur, "Works in English on the Imjin War and the Challenge of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8-2, 2013.
- Ray Huang, *Taxation and governmental finance in sixteenth-century Mi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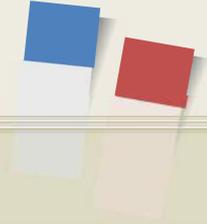
Sung Ku, Hong, "Ming dynasty maritime provisions transport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East Asian War (1597-98)", *Chinese Studies in History* 52, 2019.

【제4발표】

임진전쟁기 중국 선박의 조선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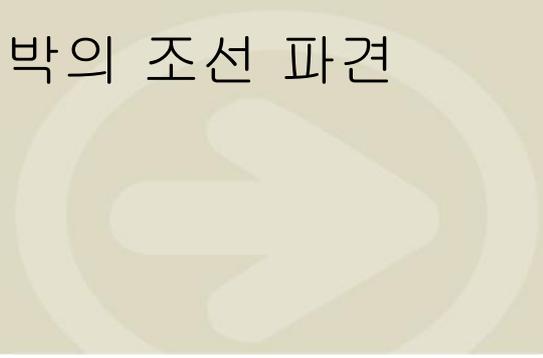
남민구(동국대)

남민구(동국대학교)



전쟁과 물자: 군수체계로 보는 임진전쟁

임진전쟁기 중국 선박의 조선 파견



I. 머리말



개요

- 선박 : 물품을 싣는 도구, 동시에 물품 그 자체
- 물품의 왕래 현황 : 의례 교환, 상거래, 증여, 대여...
- 임진전쟁 당시 선박은 군수와 병력을 운반하는 도구이자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송 수단으로서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었음
- 정유재란기(1597~1598) 명군은 병력 증강을 위하여 중국 내지의 선박과 병력을 조선으로 수송할 것을 요청함
- 만력25년(1597) 조선에 경략(經略)으로 파견된 형개(邢玠)의 문집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

- 저자 형개(邢玠, 1540~1612) : 산둥성(山東省) 익도현(益都縣)
- 만력25년(1597) 음3월 29일 병부상서겸도찰원우부도어사총독계료보정군무검리양향 경략어왜(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總督薊遼保定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로 조선에 파견됨
-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는 이때 작성된 상주문들을 모아서 엮은 것
- 전체 10권이나 현재는 권(卷)2, 4, 6, 9, 10 5권, 총 54편의 상주문이 남아 있음
- 이 가운데에 중국 동남연안 복건으로부터 선박을 징발할 것을 요청한 상주문에 주목하고자 함



II. 1597년 형개의 수군 증강



왜정지급근의징조미진사의이제급난소



-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 권2 ‘왜정지급근의징조미진사의이제급난소(倭情至急謹議徵調未盡事宜以濟急難疏)’
- ‘증조선대계료마병역조민해상선소(增調宣大薊遼馬兵覓調閩海商船疏)’라고도 함
- 내용은 조선 내 병력 부족을 이유로 선대(宣大)와 계료(薊遼) 지역 마병(馬兵)과 복건(福建) 지역 상선을 징발할 것을 제안내용상 만력25년 경에 보내진 것으로 보임
- 상주문의 작성 날짜는 기입되어 있지 않음, 게다가 이 상주문을 그대로 옮긴 명실록 기사는 없기에 정확한 작성일자를 모름
-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는 존재 : 『명신종현황제실록』 卷311 萬曆25년(1597) 6월 15일 갑술조에는 형개가 천병(川兵)과 수병(水兵)을 징발할 것을 제의하는 기사가 수록



『명신종헌황제실록』 卷311 萬曆25年(1597) 6월 15일 갑술조

甲戌, 總督邢玠復疏陳調兵事宜, 言,

先年經略宋應昌, 東征馬步官兵七萬餘, 今總計前後募調土漢官兵, 止三萬八千餘耳. 此時騎兵已足, 惟步兵一萬. 臣滿望于川·湖, 而該部恐調發太多, 多顧此失彼, 顧臣所議調者, 夷司之土兵也. 該省所用以防虜者, 民間之軍兵也. 軍兵, 勢不可調, 臣亦未敢輕議. 土兵, 則土司所以自衛其人, 以兵爲業, 以戰爲事, 以立功報朝廷爲榮. **先年調征九絲·膩乃·黃中等處, 累立戰功, 卽征倭征虜, 亦皆調之. 及其戰勝凱旋, 各歸其業, 非若四方無籍之徒原無歸著者.** 比臣在川·貴時, 知之甚悉. 而或者謂, 其悍而難制, 是在馭之耳. 夔州水路至荊州, 只三四日程耳. 由襄陽, 而河南, 而南(直)隸, 與浙兵赴遼, 地里亦不甚相遠也. **請將已准發六千員名, 分爲二營, 先後進發, 續選三千三百名, 爲一營, 挨次起行, 文武將吏, 以各兵之擾不擾爲功罪.** 至于倭奴, 水陸皆有備. **而我水兵, 止浙之三千, 及朝鮮水兵壹枝, 共止五六千耳. 須再得二千, 稍可分布水兵. 惟浙·直·閩·廣爲最. 但浙兵調發已多, 廣東道里甚遠. 于福建南日等寨, 或直隸·吳淞等處, 抽募精兵二千, 隨與器械兼程前來, 以爲夾攻之用.** 又先年, 官兵東征朝鮮, 苦之甚于苦倭. 今已行經理鎮道, 各官嚴禁部軍, 不許秋毫擾害. 乞再頒明旨, 著爲軍令, 庶節制之師稱矣.

得旨,

川兵·水兵, 如數調發. 餘下部議.

部言,

水兵一節, 督臣原議, 未有定屬. 切謂, 吳·閩, 皆防倭要區. 若二千之衆, 取足一方, 不免以撤防爲解, 若強以不堪應命, 有名無實. **不若各抽取一千, 兩地簡發爲便.**

上是其言,

各兵依議調發. 總督經理, 約束將士, 不許纖毫騷擾. 犯者, 卽行斬首示眾. 仍著爲令.



- ❑ 기사를 살펴보면, 형개는 육병과 수병을 증강할 것을 명조정에 요청하는 내용
- ❑ 육병의 경우, 사천성(四川省) 구사(九絲, 현재 興文縣 일대에 있는 산) · 니내(膩乃, 彝族의 일파) · 황중(黃中) 등지에서 징발 인가가 난 **6천명** 이외에 다시 **3,300명**을 징발할 것을 요청
- ❑ 수병의 경우, **절강(浙江)에서 온 3천명**과 조선 수병 5~6천명이 있으니, 새롭게 **2천명을 증강해야** 한다고 형개는 건의함
- ❑ 병부는 2천명 가운데 **강소(吳)와 복건(閩) 양측에서 1천명** 씩 징발할 것을 건의, 만력제는 증병을 허가



- '증조선대계료마병역조민해상선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음
- 이 상주문은 천병(川兵)이 아니라 선대계료 마병(馬兵)을 징발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선 만력25년 6월 15일 갑술조 기사(이하 '갑술조 기사')의 형개가 작성한 상주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증조~소'에는 **신이 선후로 조병한 5만명 가운데, 천병 1만과 절강에서 후에 모집한 병사 4천명(臣先後調兵五萬, 在川兵一萬, 與浙江後募兵四千)**이라는 구절이 있음
- 여기서 '川兵一萬'이란, '갑술조 기사'에서의 '이미 준발한 6천명을 2영으로 나누고 선후로 진군하게 하고, 이어서 3,300명을 1영으로 하여(請將已准發六千員名, 分爲二營, 先後進發, 續選三千三百名, 爲一營)'라는 부분의 6천명과 3,300명, **총 9,300명**을 가리킴
- 이러한 내용은 '증조~소'에서 형개가 수군 정황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역시 '갑술조 기사' 내용과 대체로 일치



이중 조선 수병은 자못 강하다 칭하지만 근래 경리 무신이 수를 조사하니 비록 1만이지만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5천에 불과합니다. 신은 이것이 쓸만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고로 절강 수병 3천명 이외에 복건과 오송에서 각각 1천명을 증병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미 오송 병선은 신이 두 차례 응천무신(응천순무)에게 자문을 보내어 회안 지방에서 바다로 나가라고 지시한 것 외에...

此中朝鮮水兵, 頗稱強勁. 而近該經理撫臣查其數, 雖有一萬, 而堪戰止五千. 該臣已逆知其必不足用. 故於浙江水兵三千之外, 議增福建·吳淞兵船(ママ)各一千. 除吳淞兵船, 臣兩次咨行應天撫臣, 令彼自淮安出海.



- 이는 '갑술조 기사'에서 형개가 언급한 '우리 수병은 절강 3천명 뿐이며 조선수병 한 부대는 모두 5,6천명에 불과합니다(而我水兵, 止浙之三千, 及朝鮮水兵壹枝, 共止五六千耳)'라고 한 부분의 절강수병과 조선수병 수치와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형개가 복건과 오송에서 병선 1천씩 징발하자는 내용은 '갑술조 기사'에서 병부가 '吳와 閩은 모두 방왜 요충지이다 ... 각각 1천명씩 뽑아서 두 곳이 간발하는 것이 좋다(吳·閩, 皆防倭要區. ... 不若各抽取一千, 兩地簡發爲便)'라는 언급과도 일치
- 다만 복건과 오송 '兵船' 1천이라는 것은 '船兵'의 오류인 듯, 혹은 '兵船'은 '兵과 船'의 합칭일 수 있음
- 왜냐하면 그 뒤에 '근래 유격 계급이 오송병선 10척을 이끌고 왔다(近經遊擊季金, 見領吳淞兵船十隻)'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 즉 현실적으로 1천척의 선박을 당장 징발할 수도 없었을 것
- 어찌되었든 '갑술조 기사'에서 '吳閩' 즉 '吳淞'과 '福建'에서 각 1천씩의 수병을 징발하라는 건의에 따라, 형개는 오송 병사 1천명과 선박 10척을 징발한 것



- 또한 『경략어왜주의』 권2에서 '증조~소'보다 두번째 뒤에 배치된 상주문인 '왜정심분긴급추량견결선척불부걸청엄행징소타조이제만운소(倭情十分緊急芻糧見缺船隻不敷乞請嚴行徵召打造以濟輓運疏)'의 내용은 『명신종현황제실록』 권314 만력25년 9월 22일 경술조에 나옴
- 만약 『경략어왜주의』의 상주문들이 작성 시기에 따라 배치된 것이라고 한다면, '증조~소'는 천병 9,300명을 징발할 것을 건의한 만력25년 6월 15일과 9월 22일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즉 형개가 선대계료 마병과 복건 상선 추가 징발을 요구한 것은, 그가 경략으로 이제 막 부임한 직후인 만력25년 6~9월 사이에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음



III. 복건 상선의 징발



- 문제는 복건의 수병을 징발하는 것에 있음
- '갑술조 기사'에 의하면 형개는 절강수병 조발이 많아서 더 이상 조발할 수 없고 광둥은 너무 멀어서(但浙兵調發已多, 廣東道里甚遠) 조발할 수 없다고 지적
- 이로 인해 형개는 복건, 오송, 남직례(강소)에서 징발하고자 하였던 것
- 제목 '떡조민해상선(覓調閩海商船)'처럼 형개가 이 상주문을 작성한 목적은 복건에서의 선박 징발이었던 것
- 또한 형개는 제목처럼 상선을 징발하고자 하였음, '수병(水兵)'과 '병선(兵船)'을 징발한다는 절강의 경우와는 사뭇 다름
-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형개는 '복선'의 이로움을 제시함



생각건대 복건 수병은 해도가 자못 멍니다. 다만 왜를 정벌하는데 있어 소용을 따지면, 복선의 크고 견고함이 아니면 적선을 충격하여 부수는 공을 거둘 수 없으며, 복선의 가볍고 민첩함이 아니면 추격의 실효를 이룰 수 없습니다.

惟福建水兵, 海道頗遠. 但征倭所用, 非福船之大而堅者, 不足以收衝犁之功. 非福船之輕而捷者, 不足以成追擊之效.



- 형개는 '복선'을 선발하고자 하였음
- 그리고 형개가 말하는 복선이 '민해상선'이었던 것
- 그 이유는 복선이 규모가 크고 견고하여 일본군의 배를 충격하여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였고, 또한 가볍고 민첩하여 추격도 가능하였기 때문
- 복선에 대한 형개의 평가는 당시 문헌에 나타나는 '누각처럼 높고 크다(高大如樓)'는 복선에 대한 기본적인 평과 같음
- 『주해도편(籌海圖編)』 등에는 다음과 같이 복선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



『주해도편(籌海圖編)』 내 복선 기록

□ 호종헌(胡宗憲), 『주해도편(籌海圖編)』 卷13 「경략(經略)3」

복선은 누각처럼 높고 커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은 뽀족하고 위는 넓으며, 머리는 위로 들어올려져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꼬리는 높이 솟아 있고 키가 설치되어 있다. 누각은 위로 세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은 모두 호판(護板)으로 모죽(茅竹, 죽순대)으로 못을 박아 고정하여 **담벼락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돛은 2개로, 가운데는 네 층이다. 가장 아래 1층은 거할 수 없으며, 오직 흙과 돌을 채워 넣어 가볍게 등등 떠다니지 못하게 한다. 2층은 병사들이 쉬는 곳으로 지판(地板)으로 덮어 두어 위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3층은 좌우에 문 6개로 지키며, 가운데에는 수궤(水櫃, 물통)가 있으며, 돛을 날리고 밭을 짓는 곳이다. 전후에 목정(木楫, 나무뚝)이 설치되어 있고 종려나무 줄로 돛을 내린다. 돛을 올릴 때는 3층에서 힘을 써야 한다. 최상부 1층은 노대(露臺) 같아서 3층 구멍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하며, 두 옆면이 난간처럼 판익(板翼)을 갖추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하여 적을 공격한다. 화살, 돌, 화포는 모두 내려다보면서 적의 배에 쏘며, 작은 적선은 만나면 격침시키니, 적 또한 올려다보며 공격하기 힘든 바, 진실로 해전에 유익한 기기이다. 다만 순풍과 순조에만 다닐 수 있고, 배를 크게 돌리는 것이 불편하며, 또한 해변 가까이 정박할 수 없어, 초선(哨船)이 복선에 접근하여 육지에 건네 주어야 가능하다.

福船, 高大如樓, 可容百人, 其底尖, 其上潤, 其首昂而口張, 其尾高聳設舵. 樓三重于上, 其傍皆護板, 釘以茅竹, **堅立如垣**. 其帆桅二道, 中爲四層. 最下一層, 不可居, 惟實土石, 以防輕飄之患. 第二層, 乃兵士寢息之所, 地板隱之, 須從上躡梯而下. 第三層, 左右各護六門, 中置水櫃, 乃揚帆炊爨之處也. 其前後各設木楫, 繫以棕纜下楫, 起楫, 皆于此層用力. 最上一層, 如露臺, 須從第三層穴梯而上, 兩傍板翼如欄. 人倚之以攻敵, 矢石火炮, 皆俯瞰而發敵舟, 小者相遇, 卽犁沈之, 而敵又難于仰攻, 誠海戰之利器也. 但能行于順風順潮, 回翔不便, 亦不能逼岸而泊, 須假哨船接渡而後可.



‘증조~소’

복건 해징현에서 출항하여 서양에서 교역하는 상선의 경우, 그 선박은 극히 견고하고 날카로우며, 그 화약과 무기는 극히 정밀하고 날카로우며, 그 사람은 수전에 익숙할 뿐더러 또한 일본의 정형과 험이를 잘 아나, 병사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간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총병(總兵) 척계광(戚繼光)이 이들을 이용하여 왜구를 방어하였으며,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복건순무에게 행문하여 이들을 불러모으고 충성과 용맹을 고무하면 필히 교화에 따라 의를 좇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으면 100척을 조발할 수 있고 못해도 50척 이상입니다. ... 복건, 절강, 오송, 조선(의 군대)를 총괄하여 겸하는 것을 상선의 병사로 할 수 있고, 바람의 정도, 물의 흐름, 왜정, 전법을 모두 이들을 통해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福建海澄縣出販西洋商船, 其船極堅而利, 其軍火器械極精而銳, 其人習於水戰, 且熟知日本之情形險易, 不特可用之爲兵, 亦可用之以爲間. 先年總兵戚繼光曾用之禦倭, 卒收奇捷, 宜併行福建撫臣號召其衆, 鼓其忠勇, 必有嚮風趨義者, 多則覓調一百隻, 不能則五十隻以上. ... 庶總閩·浙·吳淞·朝鮮而兼之以商船之兵, 風色·水勢·倭情·戰法, 皆彼之熟路輕車.



- 형개가 말하는 '복선(福船)'은 복건 장주부(漳州府) 해징현(海澄縣)에서 출항하여 서양(西洋)에서 교역하는 상선이었던 것
- 명조는 초기에 조공(朝貢)과 해금(海禁)의 대원칙을 고수함 : 외국 교역은 오로지 국가를 대표하는 조공 사절단을 따라온 상인과 물품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허용함
- 반면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사무역에 대한 수요는 시간을 거듭할 수록 높아졌음
- 16세기 이후 조공무역을 차단당한 일본과 동아시아에 새롭게 등장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중국 상인들과의 밀무역이 성행하였음, 이는 북방 몽골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음
- 원칙과 현실의 괴리는 가정 연간 북로남왜(北虜南倭)라는 현상을 불러옴 : 남왜의 경우, '가정대왜구(嘉靖大倭寇)'라고도 불림, '왜구'라는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 등이 포함된 상인/해적 세력이 연안에서 밀무역과 노략을 일삼으면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함
- 이러한 현상을 겪은 명조는 융경원년(1567), 조공과 해금의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조처를 내림
- 융경개양(隆慶開洋) : 융경원년 해징현 월항(月港)에 등록된 상선은 출항하여 해외에서 교역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처
- 북방에서도 알탄칸(Altan Khan, 俺答汗, 1508~1582)을 순의왕(順義王)으로 봉하고 판승(板升)에서 교역을 허용



- 서양(西洋)의 경우, 오늘날의 기준이 아닌 당시 명대의 동양과 서양을 말함
- 장섭(張燮, 1574~1640) 『동서양고(東西洋考)』
- 동양 : 필리핀 제도, 브루나이섬, 대만도
- 서양 :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 제도 일대
- 융경개양으로 '동양'과 '서양' 일대로 출항하는 상선들이 생겨나면서, '서양'으로 출항하여 교역하는 상선들이 늘어났던 것
- 이러한 상선들은 왜구나 해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였을 것, 정교한 무기와 화포를 싣고 선원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것
- 또한 해외 도처를 다니면서 일본인들과의 조우가 활발하였기에 일본에 대한 첩보를 쉽게 접하였음



- 그렇다면 50척~100척은 어디에서 왔는가?
- 『남오유소기(南澳遊小紀)』에 의하면 만력4년(1576) 복건 당국은 선박 40척을 주조함
만력4년, 福船12척, 哨東船16척, 鳥船12척, 총 40척을 額設한 후, 官銀을 받아 海澄縣 沙坂 지방에 지급하여 成造함
萬曆四年, 額設福船一十二隻, 哨東船一十六隻, 鳥船一十二隻, 共四十隻, 領給官銀于海澄縣沙坂地方成造.
- 즉 이때 유요회는 남오(南澳)라는 수채(水寨)에만 40척의 복선, 초동선, 조선을 만들었던 것



- 『남오유소기(南澳遊小紀)』에 의하면, 이후로도 남오의 선박은 만력8년(1580)과 12년(1584)에 각각 복선 2척과 4척을 조선(鳥船)과 초선(哨船)으로 개조, 만력22년(1594) 복선 4척을 추가 건조, 만력25년(1597) 어선4척, 팔호선2척 증조, 복선 2척을 초선으로 개조하는 등, 정유재란기까지 선박을 추가 건조하거나 복선을 전선으로 개조함
- 당시 남오는 유요회가 조주(潮州) 해적을 막고자 새롭게 개발한 군사기지였음, 『남오지(南澳志)』 권3 「건치(建置)」에는 남오의 군사기지화 과정의 시초로 유요회를 지목함, 유요회가 남오를 군사기지화하고 남오총병(南澳總兵)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상주가 기재되어 있음



- 당시 복건순무는 유요회(劉堯誨, 1522~1585, 복건순무 재임 1573~1576)였음
- 유요회의 재임 시기에 불과 몇 년 전인 1567년 용경개양이 이뤄짐, 1571년 스페인인들이 루손 마닐라(Manila)에 식민정청을 수립함
- 복건-마닐라를 잇는 해상 교역이 활발히 이뤄짐, 특히 만력원년(1573) 대학사 장거정(張居正)의 일조편법(一條鞭法) 시행으로 세금의 은납화가 이뤄지면서 은의 수요가 급증
- 유요회는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에서 마닐라로 가져오는 은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복건 군비를 증강하는 정책 방향 시행



- 그 일환으로 유요회는 재임 중에 수채의 정박하는 군선 수를 늘렸던 것
- 남오 이외에도 복건성 연안 다섯개 주요 수채인 '민해오대수채(閩海五大水寨) 즉 봉화문(烽火門), 남일(南日), 오서(浯嶼), 소정(小埕), 동산(銅山)에도 선박이 존재
- 유요회는 이전 순무들이 군비를 감축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았으며 이를 조사하고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도 하였음
- 유요회, 『독무소의(督撫疏議)』 「작의병식소(酌議兵食疏)」

남일 등 5개 수채 선박들은, 매 채마다 전선 대소 40척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32척으로 줄었고, 매 복선마다 (그 소모 비용을) 정가 258량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220량으로 줄였습니다. 이전 當事者(복건순무)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각 채마다 8척을 줄일 수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32척도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능히 각 선마다 30량을 줄일 수 있으니, 이를 합쳐 200여량도 모두 쓸데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개 배가 적으면 방비가 소홀하고, 비용을 줄이면 무기가 납습니다. 백성에게 손해이고 재정에도 무익합니다. ... 이제 각 병비해도관들에게 행문하여 조사와 논의를 한 후 군량이 조금 충족되면 제가 원래 액수(즉 40척, 258량)에 따라 모든 선박과 병기들을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若南日等伍水寨船隻, 每寨額設戰船大小四十隻, 今裁抑至三十二隻, 每福船定價二百五十八兩, 今裁抑至二百二十兩, 在當事者, 以爲我能爲各寨省八船, 而併此三十二船皆爲剩物也. 我能爲各船省三十金, 而併此二百金皆爲冗費也. 蓋船寡則備疏, 費減則器敝, 徒損於民, 而無益於用. ... 今有行各該兵備海道官, 查議訖, 待後糧餉稍充裕, 容臣舉照額數, 一應船隻及兵目器具, 悉與查復.



- 즉 유요회는 가정대왜구와 임진전쟁 사이 이른바 '전간기(戰間期)'에 복건-마닐라 무역 및 해징현 월항 세금 징수에 있어서의 복건 당국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군비를 확충하려 노력하였음
- 또한 실제로 남일 등 5채와 남오에 복선 등의 선박을 대량으로 구축하였음
-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형개가 복건 남일 등지에서 병력과 전선을 선발하여 조선으로 보내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이때 만력 연간 초기의 유요회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갑술조 기사'(于福建南日等寨, 或直隸·吳淞等處, 抽募精兵二千)



-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스페인인들이 접한 복건 선박의 규모에서도 드러남
- 1594년 복건순무 허부원(許孚遠)은 루손에 유랑하는 중국인들을 신기 위하여 황복(黃復) 등 상인의 선박 50여척을 파견함(『경화당집(敬和堂集)』), 이들은 루손 현지에서 교역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그만큼 50여 척의 상선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 이것이 형개가 말하는 50~100척의 복선을 의미



결론

- 정유재란기인 만력25년(1597) 명군의 해선은 조선과 가까운 절강과 강소는 물론 복건 선박들도 동원되었음
- 이들 동원된 복건 선박들 가운데 '복선'은 상선이었음
- 이들 선박이 대량으로 제조된 것은 만력4년(1576) 경 복건 순무 유요회를 통한 것이었음
- 유요회는 복건-마닐라 무역 항로로부터 얻은 수익을 군비 증강에 사용하였음, 그 결과가 바로 복건의 엄청난 수의 선박이었던 것



기타 임진전쟁 관련 연구

- 「1594년 福建巡撫 許孚遠의 呂宋 사신단 파견 - 7명의 중국 관원' 파견의 전말-」, 『명청사연구』54, 2020.10.
- 「정유재란기 南兵守備 姜良棟의 교섭 활동 - 『鎮吳錄』을 중심으로-」 『학림』50, 2022.9.

【제5발표】

**宗義智 수신 德川家康 서장을 통해 본 조일 국교회복
: 朝鮮 물품의 獻上에 주목하여**

이해진(동국대)

宗義智 수신 徳川家康 서장을 통해 본 조일 국교회복* : 朝鮮 물품의 獻上에 주목하여

이해진(동국대)

1. 머리말
2. 宗義智 수신 徳川家康 서장 7통
3. 『譜牒餘祿』에 수록된 서장 4통의 연대 비정
4. 서장에 등장하는 조선산 물품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 이후 이루어진 조일 강화교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¹⁾ 그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1607년 통신사의 초빙을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명의로 조선 측에 전달된 국서(國書)의 날조 여부였다.²⁾ 초기의 연구들은 이 이에야스 국서의 날조 가능성에 주목하여 강화교섭의 추진 과정에 쓰시마의 독자적인 입장이 적잖이 반영되었다고 파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쓰시마 측이 강조한 이에야스의 강화 의지 또한 조선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하였다.³⁾

그러나 이에야스 국서의 실재를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⁴⁾와 민덕기⁵⁾를 시작으로 강화교섭에 반영된 이에야스의 의지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홍성덕은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부터 쓰시마 측이 도요토미(豊臣) 정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0S1A6 A3A01054082).

- 1) 대표적인 연구로는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69; 田中健夫, 「鎖國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9(1965 초출); 閔德基, 「家康期の朝・日講話交渉と對馬」,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1994; 洪性德, 「壬辰倭亂直後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1995; 李啓煌,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1997; 김문자,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徳川家康」, 『중앙사론』 44, 2016; 荒木和憲, 「「壬辰戰爭」の講和交渉」, (關口グローバル研究會) 『SGRAレポート』 86, 2019 등이 있다.
- 2) 강화교섭에 반영된 도쿠가와 정권의 의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해서는 '偽造說', '改書說', '眞書說'이 발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米谷均, 「近世初期日朝關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稻田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紀要』41-4, 1995; 김경태,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韓國史學報』36, 2009의 연구사 정리를 참조.
- 3) 田中健夫, 주 1) 논문이 대표적이다.
- 4) 高橋公明, 「慶長十二年の回答兼刷還使の來日についての一考察 : 近藤守重說の再檢討」,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1, 1985.
- 5) 閔德基, 주 1) 논문.

권의 중추에 있던 이에야스와 논의하여 강화교섭을 추진하였다는 견해를 보였으며,⁶⁾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는 에도막부의 창립(1603) 전년인 1602년부터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정권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조선과의 외교교섭에 그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논하였다.⁷⁾

홍성덕과 아라키는 강화교섭에 대한 이에야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 이에야스가 쓰시마 도주(島主)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 보낸 서장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서장은 총 7통⁸⁾인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강화교섭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1차 사료가 일본 내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당 사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화교섭에 작용하고 있던 일본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적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7통의 서장 중 6통은 요시토시가 헌상한 물품에 대하여 이에야스가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서장에 등장하는 물품 중 가령 매⁹⁾와 호피¹⁰⁾ 그리고 인삼¹¹⁾ 등은 강화교섭 과정에서 쓰시마 측이 조선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과 더불어 그 담당자였던 쓰시마 측이 이에야스에게 이러한 조선산 물품들을 헌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고찰을 진행하면서 강화교섭 시기에 요시토시가 수령한 이에야스의 서장 7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강화교섭의 면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해당 서장의 송부에 배경이 되었던 발신자(이에야스)와 수신자(요시토시)의 입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이루어진 강화교섭의 전말을 보다 세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7통의 서장은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九州國立博物館)에 원본과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료의 현물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對馬島宗家文書'에 전해지는 서장들의 사본인 『家康様御書七通之寫』¹²⁾를 참조하였다.

6) 홍성덕, 주 1) 논문.

7) 荒木和憲, 주 1) 논문.

8) 소 요시토시가 수령한 도쿠가와와 이에야스 서장 7통의 탈초본은 中村孝也, 『徳川家康文書の研究』 中巻・下巻之一(日本學術振興會, 1958・1959)과 徳川義宣, 『新修 徳川家康文書の研究』(徳川黎明會, 1983)에 수록되었으며, 서장의 원문을 소장하고 있는 규슈 국립박물관(九州國立博物館)의 '對馬宗家文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검색을 통해 탈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9) 쓰시마번의 매 구청 및 막부·다이묘를 대상으로 한 매의 증여에 관해서는 田中健夫, 「朝鮮の鷹」,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1977 초출); 泉澄一, 「對馬藩の高麗鷹進上にみる幕藩體制」, 『關西大學文學論集』 50-1, 2000; 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등을 참조.

10) 조선 호피의 일본 전래에 관해서는 平木實, 「朝鮮時代初期における「虎」をめぐって」, 『朝鮮學報』 186, 2003; 楠瀬慶太, 「虎皮考: 日本古代中世における虎皮の流通と消費に関する一考察」, 『比較社會文化研究』 25, 2009;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2018 등을 참조.

11) 조선 인삼의 일본 수출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55, 2017 등을 참조.

2. 宗義智 수신 德川家康 서장의 개관

먼저 본 장에서는 소 요시토시가 이에야스로부터 수령한 서장 7통을 개관하겠다. 머리말에 소개한 『家康様御書七通之寫』에 수록된 7통의 서장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본문(번역문/원문)	일자	수신자	발신자	추정 연도	비고
①	<p>멀리서 보낸 안부로서 그 지역의 명물(名物) 여러 가지를 보내주신 것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세히는 모토토요(元豊)가 이야기할 것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삼가 줄입니다.¹³⁾</p> <p>為遠路御音信、其地之名物色々送給、祝着之至候、委細元豊可申候間、令省略候、恐々謹言、</p>	10月 27日	羽柴對馬守殿	家康様 御判	慶長7年 (1602)	譜
②	<p>멀리서 서찰과 물품 2종을 올려보내셨습니다. 특히 바둑돌(碁石)이 훌륭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高麗 [조선]에 관한 건은 별지(別紙)로 받았 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모토토요가 이야기할 것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삼가 줄입니다.¹⁴⁾</p> <p>遠路使札并兩種為上給候、殊碁石見事候、祝着之至候、隨而高麗儀、別紙承候、得其意候、委細者元豊可申候間、令省略候、恐々謹言、</p>	12月 30日	羽柴對馬守殿	家康様 御判	慶長7年 (1602)	譜
③	<p>이국(異國)에 바한부네(は > む 船)를 건너보내는 일을 금지하였지만, 한층 더 엄격히 조치하길 바랍니다. 만일 위배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영지 전체에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¹⁵⁾</p> <p>異國へは > む 船相渡事雖令停止、猶以堅可被申付候、若於違背之輩者、其一在所可被加御成敗者也、</p>	2月 28日	對馬侍從殿	家康様 御黒印	慶長10年 (1605)	譜

12) 『家康様御書七通之寫』,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당 사료의 첫 번째 쪽에 적힌 작성 경위에 따르면, 1711년(寶永8)에 쓰시마번이 과거 막부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 이에야스의 서장 7통을 영지에서 봉서(奉書)용 종이에 옮겨 적어 에도로 올려보내었으나, 부피가 커서 책자 형태로 다시 사본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13) 德川義宣, 주 8) 사료집, 339~340쪽에 수록.

14) 中村孝也, 주 8) 사료집(下卷之一), 274쪽에 수록.

15) 中村孝也, 주 8) 사료집(中卷), 442쪽에 수록.

16) 中村孝也, 주 8) 사료집(下卷之一), 180·231쪽; 德川義宣, 주 4) 사료집, 347쪽에 수록. 나카무라의

	본문(번역문/원문)	일자	수신자	발신자	추정 연도	비고
④	그쪽의 정황을 소상히 전해주셨습니다. 강화(無事)가 더욱 진척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대 응(大鷹) 2마리와 호피(虎皮) 2장을 멀리서 보내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¹⁶⁾	5月 23日	對馬侍從殿	家康様 御黒印	慶長10年 (1605)	譜
	其許之様子、懇被申越候、無事之儀相調候様可被入精候、將又大鷹二居・虎皮二枚、遠路祝着候也、					
⑤	멀리서 때때로 인삼과 후 ¹⁷⁾ 를 보내주시니 도착해서 기쁩니다. ¹⁸⁾	9月 晦日	對馬侍從とのへ	家康様 御黒印	慶長8年 (1603) ~ 慶長19年 (1614)	
	遠路度々人参并卓到来、喜悦候也、					
⑥	안부 차 보내주신 밀랍(蜜蠟) 70근이 도착해서 기쁩니다. ¹⁹⁾	12月 22日	對馬侍從とのへ	家康様 御黒印	慶長8年 (1603) ~ 慶長19年 (1614)	
	為音信蜜蠟七十斤到来、喜悦候也、					
⑦	연말의 축의로 보내주신 고소대(小袖) 1벌분의 우치아야(内綾) ²⁰⁾ 1단이 도착해서 기쁩니다. ²¹⁾	12月 28日	對馬侍從とのへ	家康様 御黒印	慶長8年 (1603) ~ 慶長19年 (1614)	
	為歳暮之祝儀、小袖一重之内綾一到来、喜悦候也、					

【표1】『家康様御書七通之寫』에 수록된 宗義智 수신 德川家康 서장 목록

비고란의 '譜'는 막부의 기록인 『譜牒餘祿』²²⁾에 수록된 서장(4통)임을 표시한 것이다. 1683년에 막부는 도쿠가와 가문의 창업사에 해당하는 『武徳大成記』 편찬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만 석(石) 이상의 다이묘들에게 이전 쇼군들에게 받았던 서장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듬해인 1684년에 『貞享書上』로 취합하였다. 그러나 그 원본은 현재 소실되었으며, 18세기에 사본으로서 만들어진 『譜牒餘祿』만이 남아있다.²³⁾ 적힌 서장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쓰시마번 측이 기존에 번

자료집은 같은 내용의 서장을 '五月廿三日'(180쪽)과 '九月廿三日'(231쪽) 일자로 따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쿠가와가 新修本에서 바로잡은 바와 같이 중복 게재이며, 서장의 발송 일자는 '五月廿三日' 쪽이 맞다(德川義宣, 주 8) 자료집, 348쪽).

17) 원문이 '人参并卓'이어서 '卓' 또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어에서 '卓(しょく)'는 ①불단에 사용하는 탁자, ②향(香)의 이름, ③탁향로(卓香爐)의 준말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원어 그대로 두었다. 또한 물품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18) 德川義宣, 주 8) 자료집, 488쪽에 수록.

19) 德川義宣, 주 8) 자료집, 500쪽에 수록.

20) 본래 '打綾'라고 표기하는 우치아야는 두드려서 광택을 낸 능직물을 뜻한다.

21) 德川義宣, 주 8) 자료집, 501쪽에 수록.

22) 「宗對馬守書上」, 『譜牒餘祿』(일본 국립공문서관 內閣文庫 디지털 아카이브)

23) 平野仁也, 『『貞享書上』考』, 『史學雜誌』 125-4, 2016 참조. 특히 쓰시마번의 『貞享書上』 제출에 관해서는 이해진,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에도시대의 역사서술 : 17세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234~235쪽 참조.

내에 전해지던 이에야스의 서장 중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긴 것만을 선별하여 막부에 제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7통의 서장들은 본래 모두 연도가 기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화교섭 시기의 정황을 통해 작성 연대를 추측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선행연구의 비정 결과 및 본 논문에서 추가로 고찰할 추정 연도는 【표1】에 적은 대로이다. 다음 장부터는 선행연구의 비정 결과를 소개하고, 추가적인 고찰을 진행하겠다.

3. 『譜牒餘祿』에 수록된 서장의 연대 비정

(1)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표1】에 제시한 7통의 서장 중 ①②④는 이미 선행연구의 연대 비정 결과가 있다.

먼저 ①번과 ②번의 작성 연도는 나카무라와 도쿠가와 사료집 모두 '1602년(慶長7)'으로 비정하였다. 그 이유로 도쿠가와는 두 서장의 수신자명이 '하시바 쓰시마 노카미님(羽柴對馬守殿)'이며, 또한 문체가 정중하다는 점을 보아도 다른 서장들보다 작성 시기가 빠르고 이에야스의 쇼군 취임(1603년 2월 12일)보다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²⁴⁾ 도쿠가와의 설명대로 두 서장의 말미는 '삼가 줄입니다(恐々謹言)'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야스가 직접 화압(花押)을 찍어 성의를 보였다. 또한 수신자인 요시토시의 이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다이묘들에게 사성(賜姓)한 '하시바(羽柴)'라는 성을 적었기에, 여전히 도요토미 정권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에도막부의 성립 이전에 작성된 서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다섯 통의 서장은 모두 에도막부가 성립한 160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서장 ①과 ②에서 이에야스는 자세한 사정을 야마나 모토토요(山名元豊, 1548~1626)에게 듣도록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중개인이 매개하던 모습을 보아도 서장 ①과 ②는 이에야스와 요시토시 사이에 다소간의 거리감이 있던 상황에 작성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이 직접 교신하는 다른 서장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서장 ②에서 이에야스는 별도로 첨부된 문서를 통해 '高麗[조선]에 관한 건', 즉 강화교섭의 진행 상황을 잘 보고 받았다고 답하였다.

모토토요는 본래 이나바노쿠니(因幡國)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였으나, 히데요시에게 항복한 뒤 출가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명문가의 자제로서 고실(故實)에 밝고 교양이 깊었기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오토기슈(御伽衆)로 삼아 곁에 두었다.²⁵⁾ 모토토요는 쓰시마번 사료인 『宗氏家譜』나 『柳川調興公事記録』 등

24) 徳川義宣, 주 8) 사료집, 340쪽.

25) 오토기슈는 권력자가 정치·외교·교양의 필요 상 측근으로 거느렸던 문화인을 뜻한다. 모토토요는 히데요시에게 항복한 뒤 출가하여 이후 젠코(禪高)라는 이름을 썼으며, 후일 도요쿠니(豊國)로 개명하였다. 히데요시 사후에는 이에야스의 휘하로 들어갔으며, 이에야스 사후에는 그 아들 히데타

에서 종종 이에야스·히데타다와 소 가문을 중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멀리서(遠路)'라는 서장의 기술이 암시하듯, 규슈 북쪽 변경의 쓰시마에게 중앙과의 소통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강화교섭 초기에는 도주 요시토시와 가신인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번갈아 가며 기나이(畿內) 지역과 쓰시마를 왕복하였으며, 이후에는 에도 막부의 항시적인 소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게노부의 손자인 시게오키(調興)를 이에야스의 휘하로 파견하기도 하였다.²⁶⁾ 서장을 통해 에도막부의 성립을 전후한 일종의 과도기에는 쓰시마 측이 모토토요와 같은 인맥을 동원하여 권력의 중추와 소통할 통로를 마련하였던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서장들은 '쓰시마 지주님(對馬侍從殿 혹은 對馬侍從とのへ)'이라는 수신자명 외에도, 1602년의 서장 2통이 이에야스가 직접 화압을 찍었던 것과는 달리 흑인(黑印)을 찍었기에 격식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서장 ④는 19세기에 편찬된 에도막부의 창업사(創業史)인 『朝野舊聞哀藁』(1842년 성립)의 1602년 기사에 인용되었다.²⁷⁾ 그 이유는 쓰시마번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譜牒餘祿』에 선대 쇼군들의 서장과 함께 수록된 「朝鮮通交覺書」가 조선과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있던 1602년에 이에야스가 친히 요시토시에게 서한을 하사하여 강화 추진을 독려했다고 서술한 내용²⁸⁾을 참조하여, 이때 하달된 이에야스의 친필 서한을 '강화(無事)'에 관하여 언급한 서장 ④로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수신자명 문제를 고려하면 서장 ①과 ②보다 먼저 ④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더욱이 에도막부의 성립 이후를 작성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나카무라와 도쿠가와와 사료집은 서장 ④를 '1603년(慶長8)'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아라키는 강화교섭의 전개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해당 서장을 '1605년(慶長10)'에 송운(松雲)이 쓰시마 측의 중개하에 이에야스를 접견하고 귀국한 뒤, 요시토시로부터 그 경과를 보고받은 이에야스가 보낸 답장이라고 비정하였다.²⁹⁾ 서장 ④의 내용은 강화교섭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쓰시마가 추진하던 교섭이 소기의 성과를 보인 1605년에 발송된 서장이었다고 판단한 아라키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대신 아라키는 도쿠가와가 비정한 작성 연대를 참조하여 「朝鮮通交覺書」에 등장하는 1602년의 이에야스 친필 서한을 서장 ②로 보았다. 또한 이때 쓰시마 측이 전년(1601) 8월에 조선이 보낸 예조참의 정엽(鄭曄)의 서계를 이에야스에게 보였으며, 그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서 해당 서장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쓰시마 측에서 해당 서계를 수령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야 강화교섭의 경과를 보고

다(秀忠)의 오토기슈가 되었다.

26) 에도시대 초기의 막부·쓰시마 관계와 야나가와 가문의 역할에 관해서는 『柳川調興公事記録』(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탈초본으로는 김상준·윤유숙 역,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2015가 있다)으로부터 대강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27) 『朝野舊聞哀藁』, 「東照宮御史蹟」 第442, 慶長7年(1602) 5月(史籍研究會 編, 『朝野舊聞哀藁』 第12卷, 汲古書院, 1983, 121쪽).

28) 「朝鮮通交覺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

29) 荒木和憲, 주 1) 논문, 13쪽.

한 이유는 1602년 4월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독자적으로 복건(福建)에 서신을 보내 강화교섭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야스로부터 강화교섭의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고 아라키는 설명하였다.³⁰⁾ 더욱이 1603년 6월에 쓰시마는 기요마사의 교섭 중에 불경한 언사가 있었음을 힐문해온 조선 측에게 '家康手押'의 존재를 알리며 강화교섭은 이에야스의 지시로 자신들이 전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³¹⁾ 이때 조선에 제시한 '家康手押' 또한 1602년 12월 30일에 이에야스가 발송하여 1603년 초에 쓰시마에 도달하였을 서장 ②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家康의 海賊停止令 하달

이어서 본 절에서는 서장 ③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나카무라의 사료집은 서장 ③의 작성 연도를 미상(未詳)으로 보았으나, 수신자명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1603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바한부네(八幡船)의 도항 금지를 재차 주지시키는 내용이다. 바한부네란 '일본에서 외부의 중국이나 기타 지방으로 약탈을 위해 출항하는 배'를 뜻하며, 중국에 출몰한 왜구(倭寇)의 선박이 '하치만 대보살(八幡大菩薩)'이라는 글자를 적은 깃발을 내걸었기 때문에 '하치만(八幡)'에 대한 중국 영파(寧波) 지방의 발음에서 유래한 말이다.³²⁾ 즉 해당 서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88년에 처음으로 발령한 해적 정지령³³⁾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1598년에 히데요시가 사망한 뒤, 이듬해인 1599년에 이에야스도 다른 고다이로(五大老)들과 함께 규슈 지역의 다이묘들에게 바한부네의 도항을 단속할 것을 지시하여 히데요시의 대외정책을 계승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후 에도막부를 창설한 뒤에도 이에야스는 여러 차례 해적 정지령을 발령하였다.

당시 명과의 강화교섭을 추진하던 이에야스는 세 방향의 교섭 루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는 조선을 경유하여 명과 교섭하는 방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복건 지역을 통해 명과 직접 교섭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609년에 사쓰마번이 침략을 가해 속국으로 삼은 류큐(琉球)를 통해 명과 교섭하는 방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에야스는 명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포석으로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 가문에 지시하여 명의 인질들을 석방함과 동시에 이른바 '바한 금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1610년이 지나도 명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이에야스는 은밀히 시마즈 가문에게 '바한' 행위를 지시하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⁴⁾ 즉 기본적으로 이에야스는 강화교섭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바한 금

30) 荒木和憲, 주 1) 논문, 9쪽.

31) 『宣祖實錄』 卷163, 36年(1603) 6月 己亥(14日). 홍성덕, 주 1) 논문, 75~76쪽 참조.

32) 新村出, 「八幡船考」, 『經濟論叢』21-4, 1925; 田中健夫, 「遣明船とバハン船」,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1968년 초출) 참조. 한편 에도시대에는 '바한'이라는 명칭이 주로 밀무역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33) 도요토미 정권의 '해적 정지령'에 관해서는 三鬼清一郎, 「海賊禁止令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42, 1996; 矢部健太郎, 「天正十六年七月八日付秀吉朱印狀二種の公布狀況 : 「刀狩令」「海賊停止令」の作成過程とその目的」, 『國學院雜誌』 122-11, 2021 등을 참조.

34) 曾根勇二, 「家康・秀忠外交とバハン禁令」, 『近世國家の形成と戰爭體制』, 校倉書房, 2004 참조.

령'을 하달하여 박차를 가하고, 통교가 지체될 때 교섭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바한 지령'을 하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야스의 해적 정지령 하달과 관련한 조선 측의 사료를 검토한 결과, 1603년에 쓰시마의 시게노부가 예조에 보낸 아래의 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여름 적도(賊徒)들이 당포(唐浦) 사람을 잡아갔는데, 귀국의 변방에서 이야기하기를 죄다 우리 섬의 범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이후(內府)³⁵⁾ 이에야스가 굳게 적도들을 제어하고 있는데 어찌 귀국 변방의 섬들을 범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적도들이 다투어 변경의 섬들을 범할 수 있기에 제가 심히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 겨울 11월에 히슈(肥州)³⁶⁾에 있을 때 탐문해 보니 적도들이 당포를 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쇄환한 포로 중 한쾌량(韓快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포의 여자 1명을 먼저 쇄환하겠으며, 나머지는 반드시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85명 외에 다시 다른 섬에 있던 자들인 남녀 3명을 지금 돌려보냅니다. 우리 섬의 뜻은 사신이 상세히 고할 것입니다.³⁷⁾

위 사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602년에는 당포의 어민들이 일본의 해적에게 피랍된 일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같은 해에 거제도의 염호(鹽戶) 남녀가 납치된 사건도 있었다. 위의 사료는 이러한 어민의 피랍에 대하여 조선이 쓰시마의 소행으로 간주하여 힐문하자 시게노부가 답변을 위하여 보낸 서계였다. 여기에서 시게노부는 이미 이에야스가 해적 정지령을 하달한 상황이어서 쓰시마에서 어민을 납치해 갈리는 없으며, 탐문 결과 북규슈의 해적들이 벌인 소행임을 해명하였다. 물론 이 사료만으로 1603년에 서장 ③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후대에 집필된 기록이지만, 쓰시마번의 편찬사서인 『宗氏家譜』(1686년 초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이때[1604년(慶長9)] 본국의 해적선이 조선에 이르러 난도(卵島)[인용자 주-묘도(卯島)의 오기(誤記)]와 매매도(每每島), 사수(斜敷) 등의 땅을 침범하였다. 따라서 천장(天將)이 화호(和好)의 일을 믿지 못하였다.³⁸⁾

즉 쓰시마번의 사료는 해적들이 거제도 인근의 도서 지역(묘도, 매매도, 사수도)에 출몰하여 약탈 행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천장(天將, 명의 장수)들이 강화 요청에 불신을 품었다고 기록하였다. 위 사료에 기록된 사례 중 1601년 4월에 벌어진 사수도의 사건에 관해서는 조선 측에서도 '고토(五島)의 왜(倭)'가 노략질을 일삼은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³⁹⁾ 따라서 위 사료가 이야기하는 해적선의 출몰은 해당

35) 이에야스의 관직이었던 나이다이진(內大臣)의 이명(異名)이다.

36) 규슈 북부의 히젠(肥前)과 히고(肥後), 즉 현재의 사가현(佐賀縣)과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일부 및 구마모토현(熊本縣) 일대이다.

37) 『宣祖實錄』 卷160, 36年(1603) 3月 庚辰(24日).

38) 『宗氏家譜』, 慶長9年(1604)(鈴木棠三 편, 『對馬叢書第三集 十九公實錄·宗氏家譜』, 村田書店, 1977, 165쪽).

연도(1604)에 한정된 사건만은 아니었다.

『宗氏家譜』가 이 기사를 해당 시점에 배치한 이유는 당시의 강화교섭 상황을 적은 앞뒤의 기사들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宗氏家譜』는 1604년 7월에 쓰시마로 도해한 송운과 손문옥 일행을 요시토시가 안내하여 12월에 교토(京都)로 올라와 이에야스의 상경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1605년 2월에 송운은 쓰시마 측의 중개하에 상경한 이에야스를 접견하였으며, 이후 이에야스가 혼다 마사노부(本多正信)와 세이쇼 조타이(西笑承兌)를 파견하여 요시토시에게 '화호의 일'을 송운 일행에게 전하게끔 지시하였다고 『宗氏家譜』는 이야기한다.

즉 『宗氏家譜』의 서술에 따르면 당시 해적선의 출몰에 대한 무언가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따라 서장 ③의 작성 연도를 1605년으로 가정한다면, 2월에 송운이 이에야스를 접견한 뒤 '화호의 일'이 진척되었음을 인지하고 같은 달 말(28일)에 이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해적 정지령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쓰시마로 돌아온 요시토시로부터 송운의 귀국 사실을 보고받은 뒤, 교섭을 더욱 독려하는 답서(서장 ④)를 발송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소개한 사쓰마번에 대한 이에야스의 '바한 금령'과 '바한 지령'의 하달 상황과 위 사료의 서술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시기 해적 정지령에 담긴 목적은 비단 조선과의 강화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장(天將)' 즉 명 군문의 의심을 해소하여 대명 외교를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서장에 등장하는 조선산 물품

(1) 조일 강화교섭 시기의 물품 이동

한편 【표1】에 적힌 서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서장 ③을 제외한 여섯 통이 모두 요시토시가 헌상한 물품에 이에야스가 감사를 표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서장 ④의 매와 호피, 그리고 서장 ⑤의 인삼은 이후 진상(進上)에 대한 회사(回賜) 물품 및 사무역에서 거래되던 물품 혹은 쓰시마번이 사신의 도해 시 추가로 지급을 요청한 구청(求請)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⁴⁰⁾ 또한 서장 ⑥의 밀랍과 서장 ⑦의 우치아야 또한 쓰시마번이 사무역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획득하던 물품에

39) 『宣祖實錄』 卷137, 34年(1601) 5月 乙巳(8日).

40) 쓰시마가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여 서계를 전달하면 조선 국왕에게 헌상하는 물품의 목록을 별폭(別幅)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며, 왜관에서 이 물품들을 헌상하는 의식을 실시하였다. 이를 진상(進上)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조선의 답례 물품 전달을 회사(回賜)라 불렀다. 또한 쓰시마로부터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간청하면 회사의 명목으로 증여되었는데, 이를 구청(求請)이라 불렀다(田代和生, 주 11) 저서, 58~62쪽 참조). 사무역(私貿易)은 왜관의 개시대청(開市大廳)에서 조선의 상인과 쓰시마인 사이에서 열리는 거래로, 조선에서는 '개시(開市)'라고 불렀으며 15세기 초부터 이루어졌다. 매월 6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래에 품목과 수량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7세기 후반부터는 쓰시마번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田代和生, 주 11) 저서, 65~71쪽 참조).

해당한다.⁴¹⁾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국교가 단절된 뒤,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물품의 증답과 무역 또한 중단되었다. 그러나 1601년부터 조선이 일본의 재침을 억제하기 위해 쓰시마에 대한 기미책(羈縻策)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진상과 회사가 재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쓰시마 측 사신 굴지정(橘智正)[이데 야로쿠자에몬(井手彌六左衛門)]은 요시토시와 시게노부가 바치는 총(銃)과 창(槍), 그리고 자신이 바치는 흑각(黑角)을 지참하여 도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선은 호피·응련(鷹連)이나 그 밖의 토산물로 보답할 것을 논의하였다.⁴²⁾ 결국 12월에 굴지정이 귀국할 때 조선은 요시토시와 시게노부에게는 호·표피(豹皮)와 활을, 그리고 굴지정에게는 쌀 40섬을 하사하였다.⁴³⁾ 또한 조선은 1602년에 정탐을 목적으로 전계신(全繼信)과 손문옥(孫文彧)을 쓰시마로 파견할 때도 이덕형(李德馨)이 호·표피와 인삼, 그리고 은자(銀子)를 가져가서 상황을 보아 인정을 베풀 것을 건의하여 실행에 옮겼다.⁴⁴⁾

이어서 공무역(公貿易)⁴⁵⁾을 살펴보면 『邊例集要』는 그 시작을 1608년으로 기록하였으나,⁴⁶⁾ 이미 그 전부터 쓰시마와 조선 사이에는 공무역의 형태를 갖춘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1602년 3월에 굴지정이 도해했을 때 조총(鳥銃) 10자루, 산달피(山獺皮) 16속(束), 단목(丹木) 15근, 오징어(烏賊魚) 70속을 가져와 매매하고자 하여 호·표피 및 면포를 보내 공가(公家)에서 도매(都買)하게 하였다는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가 있었다.⁴⁷⁾ 또한 1603년 3월에도 굴지정은 동철(銅鐵)을 지참하고 도해하여 거래를 요청하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조선 조정에서는 절반만을 구입하도록 경상도에 지시하였다.⁴⁸⁾

더욱이 1603년에는 구청 또한 복구되었다. 이때 시게노부는 조선에 서계를 보내 이에야스가 원하는 것이라 하며 값을 따져 지불하겠으니 총 12종의 약재와 비단을 구해주도록 요청하였다.⁴⁹⁾ 이에 대하여 조선 조정은 사신의 접대를 맡은 전계신이 사사로이 제공하는 형태로 약재는 제공하되, 비단은 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거절하게 하였다.⁵⁰⁾

41) 田代和生, 주 11) 저서, 262~266쪽 참조. 우치야야는 중국산 견직물인 사야(紗綾)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宣祖實錄』 卷143, 34年(1601) 11月 戊午(24日).

43) 『宣祖實錄』 卷144, 34年(1601) 12月 壬辰(29日).

44) 『宣祖實錄』 卷145, 35年(1602) 1月 庚戌(17日).

45) 공무역은 조선에서 나지 않는 銅·鐵(錫)·丹木·黑角(水牛角)·胡椒·明礬 등의 물품을 해마다 일정량 조선 정부가 공목(公木, 木綿)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水牛角·丹木·明礬·胡椒 등은 동남아시아산 물품으로, 쓰시마번이 나가사키를 통해 입수하여 조선에 조달한 것들이었다(田代和生, 주 11) 저서, 63~66쪽 참조).

46) 『邊例集要』 卷之8, 「公貿易」, 戊申(1608) 正月. 『邊例集要』는 일본과의 교린 관계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장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나누어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사료로, 1598년부터 1841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단 卷12 「求請」은 1608년 기사부터 시작한다.

47) 『宣祖實錄』 卷152, 35年(1602) 7月 己巳(10日).

48) 『宣祖實錄』 卷160, 36年(1603) 3月 庚辰(24日).

49) 『宣祖實錄』 卷163, 36年(1603) 6月 己亥(14日). 이때 시게노부는 牛黃 5냥, 麝香 1근, 白藜 2근, 白蠟 1근, 辰砂 2근, 雄黃 1근, 自然銅 2근, 阿膠 2근, 光明朱 30근, 無文大傳通匹段(紅色 혹은 □<關字>色) 50여 단, 無金線大紅匹段 20단, 煮綠礬 1근 및 저장해 둔 것이 있다면 鳥紅菊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鳥銃 2자루를 진상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네 통의 이에야스 서장 중 서장 ①과 ②는 상세한 품목은 알 수 없으나, 1602년 하반기에 이에야스에게 요시토시가 바쳤던 '그 지역의 명물 여러 가지'는 확실히 조선의 물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⁵¹⁾ 이 무렵 조선으로부터 회사품으로 전해지거나 혹은 공무역을 통해 쓰시마가 구입한 물품이 이에야스에게 전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서장 ④는 송운의 귀국 보고와 함께 헌상한 호피와 매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또한 조선으로부터의 회사품을 이에야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섭의 진척 상황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2) 己酉約條 체결 후 조선 물품의 헌상

앞에서 이야기한 서장 ⑤의 인삼, 서장 ⑥의 밀랍, 서장 ⑦의 우치야야는 회사, 사무역, 구청을 통해 쓰시마 측이 조선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다만 서장의 내용이 단순히 물품 증정에 대한 답례 뿐이기에, 서장 세 통의 작성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조일 국교회복은 최종적으로 1607년의 통신사 도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609년에는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기유약조(己酉約條)⁵²⁾가 체결되어 임진왜란 이전의 세견선(歲遣船) 파견이 복구되었으며, 비슷한 시기부터는 사무역(私貿易)도 이루어지기 시작해 1610년부터는 월 6회의 정기적인 개시(開市)가 결정되었다.⁵³⁾ 한편 이 무렵부터는 『朝鮮王朝實錄』 이외에도 일본과의 교섭 및 물품의 증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추가된다. 『邊例集要』와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가 이에 해당한다.⁵⁴⁾ 해당 사료들에 수록된 1608~1614년의 기록 중 물품 교류와 관련된 사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분류	내 용	출전
1609. 01.	사무역	開市 때 紗羅·陵段·虎皮·紬·蔘 등의 물품 거래 금지를 해제	『目錄』

50) 『宣祖實錄』 卷163, 36年(1603) 6月 壬人(17日).

51) 다만 유감스럽게도 서장 ②의 '물품 2종' 중 이에야스가 훌륭하다고 칭찬한 '바둑돌'의 이동은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52) 기유약조에 관해서는 李鉉淙, 「己酉條約成立始末과 歲遣船數에 對하여」, 『항도부산』 4, 1964; 中村榮孝, 주 1) 저서; 同, 「己酉約條再考」, 『朝鮮學報』 101, 1981; 田代和生, 주 11) 저서 참조.

53) 단 기유약조의 체결 이전에 사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606년 8월에 이루어진 조선 조정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그전에도 쓰시마의 사신 굴지정이 밤에 어선에 물품을 싣고 역관에게 증개하게 하여 거래하였다고 한다(『宣祖實錄』 卷202, 39年[1606] 8月 己未[23日]). 다만 이는 조선 측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밀무역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4)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은 동래부의 장계등록에서 중요한 사안을 발췌하여 목록화한 것으로, 1608년부터 1694년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연도	분류	내 용	출전
1609. 04.	진상	平景直(시계노부의 아들)의 사적인 헌상물(물품명 미기재)	『目錄』
	회사	위에 대한 회사(물품명 미기재)	
1609. 04.	구청	黃蠟·牛黃·駿馬 → 黃蠟 200斤·駿馬 4匹 지급(5월)	『目錄』
1609. 05.	진상	貴妃圖屏風	『目錄』
1609. 05.	공무역 사무역	사신이 가져온 물품 일부는 공무역으로, 나머지는 사무역으로 거래 → 그중에서 銀子 1萬兩은 한양으로 올려보내고, 그 대가로 唐人이 파는 物貨·土産·綿紬를 지급	『目錄』
1609. 05.	구청	活鵲·活鶯·牧丹·木蓮 → 雛鶯·牧丹만을 지급	『目錄』
1609. 05.	공무역	平景直이 보낸 물품 구매 허가	『目錄』
1609. 06.	구청	平景直 : 牛黃 4兩	『邊』卷12
		외교승 겐소(玄蘇)와 그 수행원 : 清心元 30丸·金箔 600張·犀角 1兩·石雄黃 4錢·肉苳蓉 1斤10兩·川芎 1斤1兩·人蔘 13斤·熊膽 1部·黃丹 5兩·梅花硯 3部·黃毛筆 90柄·芎藭[芎藭] 10兩·牛黃 1部·黃芪 10兩·玄胡索 5兩	
1611. 01.	구청	虎皮 2令·豹皮 1令·花席 6丈·白紙 10卷·胡桃 3斗·栢子 3斗·鷹子 1連 지급	『邊』卷10
1611. 02.	구청	牛黃·羊口·鷹子·陶器(茶壺·甬兒·瓦器) →鷹子是 수를 감하고, 陶器와 함께 값을 받도록 함(4월)	『目錄』 『邊』卷12
1611. 09.	구청	弓子	『目錄』
1611. 09.	구청	日本國王(히데타다)이 찾는 물품 : 獐子·獵犬·蚊蜻·遼東帽段·無簾目簿白紙·俊鷹 → 獐子·獵犬·蚊蜻은 구매하여 지급, 나머지 3종과 虎膽은 구할 수 없으니 거절하도록 지시	『目錄』 『邊』卷12
1611. 10.	구청	鷹子·駿馬·弓子	『目錄』
	사무역	鳥銃·火藥 판매 요청	
1612. 02.	공무역	銅鐵·丹木	『目錄』
1612. 04.	구청	白苧布·神鷹 → 불허	『目錄』
1612. 11.	구청	島主(요시토시)가 江戶에 가져가려는 물품 : 羊雄雄 4口	『目錄』 『邊』卷12
1613. 02.	진상	평경직의 별폭 : 腰刀 1柄(동래부사)·鳥銃 1柄(부산첨사)	『目錄』
1613. 09.	구청	關白 源家康이 구하는 물품 : 遼東鷹馬 → 불허	『目錄』
1614. 04.	구청	家康이 구하는 물품 : 筆墨 → 불허	『目錄』

*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目錄』), 『邊例集要』卷10, 「贈給」(『邊』卷10), 『邊例集要』卷12, 「求買」(『邊』卷12)

* 이탤릭체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물품, 밑줄 표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동한 물품을 뜻한다.

【표2】『邊例集要』와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에 보이는 물품 이동

1608년에는 물품 이동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2】의 항목은 1609년부터 시작한다. 위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609년 1월에 조선은 쓰시마와의 개시(開市) 즉 사무역에서 이루어지는 紗羅·陵段[緞]·虎皮·紬·蔘 거래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 쓰시마 측이 서장 ⑤~⑦에 등장하는 물품을 한층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2】를 통해서 1609년 4월에는 쓰시마 측에서 조선에 황랍(黃蠟)을 요청하였으며, 조선이 그다음 달에 200근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부인 70근이 이에야스

에게 헌상물로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서장들은 조선과의 교역이 진전되었음을 물품 헌상을 통해 이에야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상의 사실만으로 서장 ⑤~⑦의 작성 연도를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603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어서 하한은 수령자인 요시토시의 사망 시기(음력 1615년 1월 3일)를 고려하여 1614년으로 책정하였다.

단 해당 서장들의 작성 일자가 ⑤9월 말일, ⑥⑦12월 하순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서장 중에도 ②12월 말일, ④5월 하순이 발신일인 것이 있었다. ⑦의 본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12월 하순에 보내진 서장들(②⑥⑦)은 이른바 세모(歲暮)의 축의를 보낸 데에 대한 답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④는 5월 5일의 단오(端午), 이어서 ⑤는 9월 9일의 중양절(重陽節) 헌상에 대한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헌상이 이루어진 시기는 에도 막부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이묘들이 막부에 헌상하는 물품의 목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쓰시마 측은 세모나 셋쿠(節句) 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헌상 의례 때 조선에서 구한 물품을 이에야스에게 헌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쓰시마 측이 조선의 물품을 구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 외에도, 자신들이 조선 방면의 외교교섭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에야스에게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표2】에서는 쓰시마번이 이에야스 혹은 히데타다가 원하는 것이라고 조선 측에 설명하면서 물품을 구청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청 모두를 조선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중에는 遼東帽段(1611. 09.)이나 遼東鷹馬(1613. 09.)와 같이 요동(遼東)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쓰시마 측이 요청한 사례가 보인다. 이는 당시 조선의 북변에서 성장세를 보이던 여진(女眞)의 동향을 파악하여 조선을 경유한 대명 교섭 루트의 존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쓰시마 측이 이에야스 혹은 히데타다의 희망하는 바라고 이야기한 물품 요청은 실제로 두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쓰시마 측이 사칭한 것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조선의 물품을 조달하여 헌상함으로써 막부 측의 환심을 사고, 나아가서는 조선 방면에 대한 외교 능력을 막부 측에 입증하는 데에 쓰시마 측이 열의를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 살펴본 요시토시 수신 이에야스 서장 7통은 조일 강화교섭의 배경에 자리하였던 일본 국내의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료였다. 해당 서장들은 대체로 요시토시가 헌상한 물품에 대한 이에야스의 감사를 담은 내용이었다. 즉 요시토

시가 이에야스의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이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강화교섭의 진척에 대한 이에야스 측의 조치사항이 일부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이에야스의 답신 내용을 통해서 이에 선행하였던 요시토시의 서장들이 조선과의 교섭 상황을 보고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요시토시가 이에야스에게 조선과의 교섭 경위를 보고하였던 이유는 먼저 강화교섭의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를 위하여 요시토시는 조선 방면에 대한 외교 능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막부 권력에 접근하고자 조선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이에야스에게 헌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고찰을 위하여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서술한 일본 국내의 역사서술을 참조해 보겠다. 강화교섭의 발단을 서술한 일본 국내의 역사서술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양상을 보인다.⁵⁵⁾

- ① 쓰시마 측이 조선을 설득하기 위하여 벌인 교섭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⁵⁶⁾
- ② 쓰시마 측이 강화교섭을 추진하게끔 이에야스를 설득하였다고 기록한 것⁵⁷⁾
- ③ 이에야스가 요시토시에게 밀명을 내려 우선 쓰시마의 재량으로 조선의 의사를 확인한 뒤, 강화에 긍정적이라면 公命을 칭하여 화의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기록한 것⁵⁸⁾

이들은 이른바 2차 사료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동시대에 이에야스 혹은 요시토시의 주변에 있던 이가 실제 견문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거나 에도막부 초기 즉 강화교섭이 전개되던 시대를 직접 체험한 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각각 얼마간의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화교섭의 실상은 위의 ①~③의 내용 모두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해보자면 이에야스로부터 쓰시마에 하달된 강화교섭의 지시는 실재하였지만, 이는 지극히 비밀리(‘밀명’)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당시 일본 내부의 관찰자들에게는 쓰시마 측의 활약이 전혀 파악되지 못한 것이었다.⁵⁹⁾ 게다가 이에야스의 지시는 임진왜란의 다른 참전 무장(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 가토 기요마사 등)에게도 함께 내려진 것이었기에 쓰시마 측에게 교섭의 주도권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요시토시는 이에야스 측을 ‘설득’하여 강화교섭을 쓰시마의 주도하에 진행할 수 있게끔 보장받

55) 이해진, 주 23) 논문 참조.

56) 막부 관여자에 의하여 17세기 전반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當代記』,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편찬된 막부의 창업사인 『武徳大成記』가 여기에 해당한다.

57) 다이묘와 하타모토 가문이 헌상한 가보(家譜)를 기반으로 막부가 편찬한 『寛永諸家系圖傳』, 그리고 쓰시마의 외교승이었던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만년에 쓰시마번에 남긴 『家康公初命和睦次第并信使來朝事』의 후반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58) 겐포가 막부 측에 진술한 내용을 수록한 『方長老朝鮮物語附柳川始末』, 본고에서 살펴본 『貞享書上』에 수록된 「朝鮮通交覺書」,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후 막부와 쓰시마번이 편찬한 대다수의 역사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59) 『當代記』는 1604년에 명 주둔군의 횡포에 고심하던 조선이 먼저 일본에 송운을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한 것처럼 기술하였다.

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일련의 강화교섭이 성공하여 1607년 통신사의 도일로 국교회복이 수립한 뒤에도 조선 외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 가져온 물품 헌상을 계속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덧붙여 강화교섭 당시 쓰시마 측이 지니고 있던 위와 같은 입장은 17세기 후반 『貞享書上』의 제출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즉 이때 쓰시마번이 조일 국교회복의 경위를 적은 「朝鮮通交覺書」와 함께 제출한 4통의 이에야스 서장은 조선 외교의 중개가 이에야스로부터 하달받은 번 고유의 특수하고 중대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막부 측에게 재확인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적 증거로 활용되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사료>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邊例集要』(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
『柳川調興公事記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家康様御書七通之寫』,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譜牒余祿』, 일본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디지털 아카이브
史籍研究會 編, 『朝野舊聞哀藁』 第12卷, 汲古書院, 1983
鈴木棠三 편, 『對馬叢書第三集 十九公實錄·宗氏家譜』, 村田書店, 1977

<연구서>

- 김상준·윤유숙 역,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동북아 역사재단, 2015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李啓煌,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1997
曾根勇二, 『近世國家の形成と戰爭體制』, 校倉書房, 200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9
_____,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1982
德川義宣, 『新修 德川家康文書の研究』, 德川黎明會, 1983
中村孝也, 『德川家康文書の研究』 中卷·下卷之一, 日本學術振興會, 1958·195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69
閔德基,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1994

<연구논문>

- 김경태,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韓國史學報』36, 2009
김문자,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중앙사론』 44, 2016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2018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55, 2017
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李鉉淙, 「己酉條約成立始末과 歲遣船數에 對하여」, 『향도부산』 4, 1964
이해진,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에도시대의 역사서술 : 17세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洪性德, 「壬辰倭亂 直後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1995

- 荒木和憲, 「「壬辰戦争」の講和交渉」, (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レポート』 86, 2019
- 泉澄一, 「對馬藩の高麗鷹進上にみる幕藩體制」, 『關西大學文學論集』 50-1, 2000
- 楠瀬慶太, 「虎皮考 : 日本古代中世における虎皮の流通と消費に関する一考察」, 『比較社會文化研究』 25, 2009
- 高橋公明, 「慶長十二年の回答兼刷還使の來日についての一考察 : 近藤守重説の再検討」,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1, 1985
- 中村榮孝, 「己酉約條再考」, 『朝鮮學報』 101, 1981
- 新村出, 「八幡船考」, 『經濟論叢』 21-4, 1925
- 平木實, 「朝鮮時代初期における「虎」をめぐって」, 『朝鮮學報』 186, 2003
- 平野仁也, 「『貞享書上』考」, 『史學雜誌』 125-4, 2016
- 三鬼清一郎, 「海賊禁止令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42, 1996
- 矢部健太郎, 「天正十六年七月八日付秀吉朱印狀二種の公布狀況 : 「刀狩令」「海賊停止令」の作成過程とその目的」, 『國學院雜誌』 122-11, 2021
- 米谷均, 「近世初期日朝關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41-4, 1995

2022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학술대회
『전쟁과 물자 : 군수와 물품으로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 ◎ 일시: 2022년 12월 23일(금) 13:30~17:20
- ◎ 장소: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1호관(301동) 124호 다목적홀
-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